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268-14

[www.mafra.go.kr](http://www.mafra.go.kr)

# 종 자 산 업 법 령 집

2013. 10.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 목 차 -

■ 종자산업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1
1. 종자산업법 .....	10
2. 시행령 .....	10
3. 시행규칙 .....	10
■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	103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	109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서식 .....	119



# 종자산업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종자산업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목 차

종자산업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b>제1장 총칙</b>		<b>제1장 총칙</b>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종합계획 등) 제4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조(목적) 제2조(종합계획)	제1조(목적) 제2조(정의)
<b>제2장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b>		<b>제2장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b>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제8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 제10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제11조(중소종자업자에 대한 지원) 제12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13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제14조(단체의 설립)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4조(국제협력 및 대외진출 지원)  제5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6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4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
<b>제3장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등</b>		<b>제3장 품종성능의 관리</b>
제15조(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종자산업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6조(품종목록의 등재신청) 제17조(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등)</p> <p>제18조(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제19조(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제20조(품종목록 등재의 취소) 제21조(품종목록 등재서류의 보존) 제22조(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제23조(종자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종자의 보증</b></p> <p>제24조(종자의 보증) 제25조(국가보증의 대상) 제26조(자체보증의 대상) 제27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등)</p> <p>제28조(포장검사)</p> <p>제29조(종자생산의 포장 조건) 제30조(종자검사 등) 제31조(보증표시 등)</p> <p>제32조(보증서의 발급) 제33조(사후관리시험)</p>	<p>제7조(종자생산 대행 농업단체등의 범위) 제8조(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 제9조(피해 보상의 절차 등) 제10조(종자피해조사반 구성·운영)</p> <p>제11조(국제종자검정기관) 제12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p>	<p>제5조(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및 신청) 제6조(품종성능의 심사기준) 제7조(의견서) 제8조(품종목록의 등재 서식) 제9조(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제10조(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제11조(품종목록 등재 취소의 공고)</p> <p>제12조(종자생산의 대행자격) 제13조(피해 보상의 절차)</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종자의 보증</b></p> <p>제14조(종자관리사의 등록신청 등) 제15조(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제16조(종자관리사 등록증의 변경발급신청 등) 제17조(검사 기준 및 방법 등) 제18조(검사신청 등) 제19조(재검사신청 등)</p> <p>제20조(보증표시) 제21조(보증의 유효기간) 제22조(보증서의 발급) 제23조(사후관리시험)</p>

종자산업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34조(보증의 실효) 제35조(분포장 종자의 보증표시) 제36조(보증종자의 판매 등)</p>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 종자의 유통 관리</b></p> <p>제37조(종자업의 등록)</p> <p>제38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제39조(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 제40조(종자의 수출·수입 및 유통 제한) 제41조(수입적응성시험)</p> <p>제42조(종자의 수입 추천)</p> <p>제43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제44조(유통종자의 진열·보관의 금지) 제45조(종자의 유통 조사 등)</p> <p>제46조(종자시료의 보관) 제47조(분쟁대상 종자의 시험·분석 등)</p> <p>제48조(분쟁의 조정)</p> <p style="text-align: center;"><b>제6장 보칙</b></p> <p>제49조(사용문자)</p>	<p>제13조(종자업의 시설기준) 제14조(종자업의 등록 등) 제15조(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p> <p>제16조(수출입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p> <p>제17조(유통종자의 분쟁)</p>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 종자의 유통</b></p> <p>제24조(종자업 등록신청서 등) 제25조(종자업 등록사항의 변경통지) 제26조(종자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 제27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제28조(종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p> <p>제29조(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제30조(심사기준) 제31조(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신청 등) 제32조(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물량 등) 제33조(사후보고) 제34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p> <p>제35조(품질검사의 기준 등) 제36조(수거한 종자의 보관) 제37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제38조(종자시료의 보관) 제39조(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신청) 제40조(보상 청구 등) 제41조(분쟁조정절차 등)</p> <p style="text-align: center;"><b>제6장 보칙</b></p> <p>제42조(사용문자)</p>



종자산업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조(시행일) 제2조 내지 4조 생략</p> <p><b>부 칙&lt;제5170호, 1996.12.12&gt;</b>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b>부 칙&lt;제5453호, 1997.12.13&gt;</b> 제1조(시행일) 제2조 생략</p> <p><b>부 칙&lt;제5668호, 1999.1.21&gt;</b> 제1조(시행일)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p> <p><b>부 칙&lt;제6190호, 2000.1.21&gt;</b> 제1조(시행일) 제2조(종자기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4조(기금폐지에 따른 다른 법률과의 관계)</p> <p><b>부 칙&lt;제6374호, 2001.1.26&gt;</b> 제1조(시행일) 제2조(과수 및 임목품종의 신규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p> <p><b>부 칙&lt;제6626호, 2002.1.26&gt;</b>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b>부 칙&lt;제16442호, 1999.6.30&gt;</b></p> <p><b>부 칙&lt;제16757호, 2000.3.24&gt;</b>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b>부 칙&lt;제16932호, 2000.8.1&gt;</b>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b>부 칙&lt;제17280호, 2001.6.30&gt;</b> 제1조(시행일) 제2조 생략</p> <p><b>부 칙&lt;제18311호, 2004.3.12&gt;</b> 제1조(시행일) 제2조 생략</p> <p><b>부 칙&lt;제18312호, 2004.3.17&gt;</b></p> <p><b>부 칙&lt;제19513호, 2006.6.12&gt;</b>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b>부 칙&lt;제19639호, 2006.8.4&gt;</b>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b>부 칙&lt;제20402호, 2007.11.30&gt;</b> 제1조(시행일)</p>	<p>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p> <p><b>부 칙&lt;제1396호, 2001.8.3&gt;</b></p> <p><b>부 칙&lt;제1463호, 2004.3.12&gt;</b> 제1조(시행일) 제2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에 관한 적용례)</p> <p><b>부 칙&lt;제1574호, 2007.11.30&gt;</b>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p> <p><b>부 칙&lt;제1582호, 2008.2.4&gt;</b> 제1조(시행일) 제2조(품종보호 대상작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검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보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심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p> <p><b>부 칙&lt;제1호, 2008.3.3&gt;</b>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b>부 칙&lt;제55호, 2008.12.31&gt;</b>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p> <p><b>부 칙&lt;제145호, 2010.9.1&gt;</b></p>

종자산업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b>부 칙&lt;제6999호, 2003.12.11&gt;</b> 제1조(시행일) 제2조(입시보호의 권리에 관한 경과조치)</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b>부 칙&lt;제20506호, 2007.12.31&gt;</b></p>	<p>제1조(시행일) 제2조(종자의 품질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3조(보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p>
<p><b>부 칙&lt;제7678호, 2005.8.4&gt;</b>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p>	<p><b>부 칙&lt;제20575호, 2008.1.31&gt;</b> 제1조(시행일) 제2조(처분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3조(농민의 자가채중에 관한 적용례) 제4조(심사관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국제종자검정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수출입종자의 국내 유통제한에 관한 경과조치)</p>	<p><b>부 칙&lt;제243호, 2012.1.13&gt;</b>  <b>부 칙&lt;제277호, 2012.5.17&gt;</b>  <b>부 칙&lt;제326호, 2012.12.11&gt;</b>  <b>부 칙&lt;제20호, 2013.3.24&gt;</b></p>
<p><b>부 칙&lt;제8597호, 2007.8.3&gt;</b></p>	<p><b>부 칙&lt;제20677호, 2008.2.29&gt;</b>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b>부 칙&lt;제49호, 2013.10.18&gt;</b> 제1조(시행일)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보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p>
<p><b>부 칙&lt;제8852호, 2008.2.29&gt;</b>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b>부 칙&lt;제22365호, 2010.9.1&gt;</b> 제1조(시행일) 제2조(종자관리사 보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p>	<p>제4조(종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시험·분석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p>
<p><b>부 칙&lt;제9401호, 2009.1.30&gt;</b> 제1조(시행일)</p>	<p><b>부 칙&lt;제23488호, 2012.1.6&gt;</b> 제1조(시행일) 제2조 생략</p>	
<p><b>부 칙&lt;제10332호, 2010.5.31&gt;</b> 제1조(시행일) 제2조(처분통지서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전자문서에 의한 품종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4조(무권리자의 품종보호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종자시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거절결정의 통지에 대한 적용례) 제7조(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8조(품종명칭 등록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종자보증 관련 검사서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종자보증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유통종자의 분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침해분쟁 조정 관련 조정기간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p>	<p><b>부 칙&lt;제23493호, 2012.1.6&gt;</b>  <b>부 칙&lt;제23781호, 2012.5.14&gt;</b>  <b>부 칙&lt;제24155호, 2012.10.29&gt;</b></p>	

종자산업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3조(직권조정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심판 청구기간의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품종보호 출원공고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거절사정 및 품종보호사정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종자업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수입종자에 관한 경과규정)  제1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10842호, 2011.7.14&gt;</b></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11076호, 2011.11.14&gt;</b></p> <p>제1조(시행일)  제2조(종자 결합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관한 적용례)</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11458호, 2012.6.1&gt;</b></p> <p>제1조(시행일)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종자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11704호, 2013.3.23&gt;</b></p> <p>제1조(시행일)  제2조(부처 간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종자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p>	<p>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24455호, 2013.3.23&gt;</b></p> <p>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24563호, 2013.5.31&gt;</b></p> <p>제1조(시행일)  제2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국제종자검정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칙</b></p> <p><b>제1조(목적)</b> 이 법은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임업 및 수산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종자"란 증식용·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孢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한다.</li> <li>2. "종자산업"이란 종자를 연구개발·육성·증식·생산·가공·유통·수출·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li> <li>3. "작물"이란 농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거나 양식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li> <li>4. "품종"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li> </ol>	<p><b>제1조(목적)</b> 이 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칙</b></p>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규칙에서 "유전자변형종자"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종자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조제2호의 품종을 말한다.</p> <p>5. "품종성능"이란 품종이 이 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양식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p> <p>6. "보증종자"란 이 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진위성(眞僞性)과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採種)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p> <p>7. "종자관리사"란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종자를 보증하는 사람을 말한다.</p> <p>8. "종자업"이란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p> <p>9. "종자업자"란 이 법에 따라 종자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p> <p><b>제3조(종합계획 등)</b>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종자산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p>	<p><b>제2조(종합계획)</b> ①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종자 품질관리 방안</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립·시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li> <li>2. 종자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li> <li>3.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기·장기 투자계획</li> <li>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 인력의 육성방안</li> <li>5. 종자 관련 농어가(農漁家)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li> <li>6. 민간의 육종연구(育種研究)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li> <li>7. 수출 확대 등 대외시장 진출 촉진방안</li> <li>8. 종자에 대한 교육 및 이해 증진방안</li> <li>9. 지방자치단체의 종자 관련 산업 지원 방안</li> <li>10. 그 밖에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종자 관련 국제협력 촉진 방안</li> </ol> <p>②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li> <li>2. 법 제3조제2항제8호에 따른 종자에 대한 교육 및 이해 증진방안에 관한 사항</li> <li>3. 제1항제1호에 따른 종자 품질관리 방안</li> </ol>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3.3.23&gt;</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마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b>제4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b>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는 등 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종자업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b>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b> 종자 및 종자산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장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b></p> <p><b>제6조(전문인력의 양성)</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 종자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단체 또는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p>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b>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li> <li>2.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li> <li>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을 것</li> <li>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p> <p>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p>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장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b></p> <p><b>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b></p> <p>① 「종자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② 영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p> <p>③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발급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li> <li>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li> <li>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li> <li>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li> </ol> <p>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 현황</li> <li>2. 전문 교수요원 확보 현황</li> <li>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계획서</li> <li>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서</li> </ol>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p> <p>⑤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강사료 및 수당</li> <li>2.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li> <li>3. 교육교재 제작비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li> <li>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목</li> </ol> <p>⑥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b>제7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①</b>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li> <li>2. 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li> <li>3. 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li> <li>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li> <li>5. 그 밖에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li> </ol>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b>제8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p>	<p>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b>제4조(국제협력 및 대외진출 지원)</b>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대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b>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b></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종자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교육</li> <li>2. 지역특화 농수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li> </ol>	<p>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대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종자 관련 기술개발 및 품종보호의 국제협력</li> <li>2. 종자의 대외시장 마케팅 및 홍보 활동</li> <li>3. 종자의 대외시장 개척 및 국제박람회 개최</li> <li>4. 종자 수출 관련 협력체계 구축</li> <li>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품종개발</p> <p>3.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p> <p>4. 종자생산 농어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p> <p>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b>제10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b>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1. 종자생산 농어가,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및 종자업자의 종자 개발·생산·보급·가공·유통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p> <p>2. 종자와 관련된 공익적 사업의 수행</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종자생산 농어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어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p> <p><b>제11조(중소종자업자에 대한 지원)</b>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종자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b>제12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b>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종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li> <li>2. 종자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업</li> </ol>	<p><b>제5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b>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li> <li>2. 사업계획서</li> <li>3. 전문인력 보유 현황</li> </ol>	<p><b>제4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b> 영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3. 종자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p> <p>4.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 지원</p> <p>5.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업자에 대한 지원</p> <p>6. 그 밖에 종자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p>	<p>4. 시설 명세서</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진흥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진흥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2. 진흥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p> <p>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p> <p>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⑤ 제1항에 따른 진흥센터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3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①</b>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자관련 산업계 및 연구계가 일정한 지역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종자산업 관련 기술 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② 제1항에 따른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6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①</b>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조성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1. 면적: 10헥타르 이상으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p> <p>2. 작물 재배환경: 기상(평균기온, 안개 일수, 일조시간, 강수량, 적설량 등), 토양, 자연재해, 수질, 농업용수 확보의 용이성 등</p> <p>3. 개발 여건: 부지 정리, 도로 건설 및 용수로·배수로 설치 등의 용이성</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b>제14조(단체의 설립)</b> ① 종자산업을 하는 자는 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종자 관련 산업계의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종자생산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종자기술연구단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종자기술 연구포장(圃場) 조성</li> <li>2. 종자기술 연구개발</li> <li>3. 종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li> <li>4. 종자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의 확충</li> <li>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장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등</b></p> <p><b>제15조(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①</b>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 임업 및 수산업 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에 대한 품종성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작물의 품종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등재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② 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대상작물은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로 한다. 다만, 사료용은 제외한다.</p> <p><b>제16조(품종목록의 등재신청) ①</b> 제15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대상작물(이하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이라 한다)의 품종을 품종목록에 등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자(이하 "품종목록</p>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장 품종성능의 관리</b></p> <p><b>제5조(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및 신청)</b>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등재 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이라 한</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등재신청인"이라 한다)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목록 등재신청서에 해당 품종의 종자시료(種子試料)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영양체인 경우에 그 제출 시기·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② 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신청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출원, 등록, 이의신청, 명칭 사용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6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b>제17조(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등)</b></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p>		<p>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종목록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품종의 사진 및 종자시료. 다만, 종자시료가 영양체인 경우에는 재배시험 적기(適期)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한다.</li> <li>2. 품종목록 등재신청 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li> <li>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li> <li>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심사서 1부(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만 해당한다)</li> </ol> <p><b>제6조(품종성능의 심사기준)</b>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종성능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재신청을 한 품종에 대하여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한 품종이 제1항에 따른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한 품종이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에게 알리고 해당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을 품종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는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사의 종류</li> <li>2. 재배시험기간</li> <li>3. 재배시험지역</li> <li>4. 표준품종</li> <li>5. 평가형질</li> <li>6. 평가기준</li> </ol> <p><b>제7조(의견서)</b>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 또는 취소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li> <li>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li> </ol> <p><b>제8조(품종목록의 등재 서식)</b>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품종목록의 등재는 별지 제7호</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b>제18조(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b>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한 경우에는 해당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종류, 품종명칭, 제19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등을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등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3.3.23&gt;</p>		<p>서식에 따른다.</p> <p><b>제9조(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①</b> 법 제18조 전단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li> <li>2.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의 대리인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li> <li>3. 품종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육성자와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li> <li>4.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li> <li>5. 품종의 명칭</li> <li>6.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li> <li>7. 품종의 성능 및 시험성적</li> <li>8. 재배적응지역</li> <li>9. 품종목록 등재번호 및 품종목록 등재 연월일</li> <li>10.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중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중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중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b>제19조(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b> ① 제 17조제4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10년까지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의하여 계속 연장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한 품종이 품종목록 등재 당시의 품종성능을 유지하고 있을 때</p>		<p>재의 유효기간</p> <p>② 법 제18조 후단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제4호·제5호·제9호의 사항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p> <p><b>제10조(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b>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에는 그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3.23〉</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에게 연장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⑥ 제5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p> <p><b>제20조(품종목록 등재의 취소)</b>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종의 품종목록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목록 등재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1. 품종성능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경우</p>		<p><b>제11조(품종목록 등재 취소의 공고)</b>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에 관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li> <li>2. 품종목록 등재 취소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li> <li>3. 품종목록 등재 취소 연월일</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2. 해당 품종의 재배로 인하여 환경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경우</p> <p>3.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된 품종명칭이 취소된 경우</p> <p>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목록 등재를 받은 경우</p> <p>5. 같은 품종이 둘 이상의 품종명칭으로 중복하여 등재된 경우(가장 먼저 등재된 품종은 제외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소결정을 하면 그 취소결정의 등본을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에게 송달하고 그 취소결정에 관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b>제21조(품종목록 등재서류의 보존)</b>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목록에 등재한 각 품종과 관련된 서류를 제19조에 따른 해당 품종의 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b>제22조(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b>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한 품종의 종자 또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자 생산을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종자의 생산·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li> <li>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이라 한다)</li> </ol>	<p><b>제7조(종자생산 대행 농업단체등의 범위)</b>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 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li> <li>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li> <li>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li> </ol>	<p><b>제12조(종자생산의 대행자격)</b> 법 제22조제5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종자업자</li> <li>2. 해당 작물 재배에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농어업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인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나 관할 국립종자원 지원장의 확인을 받은 자</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p> <p>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 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이하 "농업단체등"이라 한다)</p> <p>5.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어업인</p> <p><b>제23조(종자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 ①</b>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생산·보급한 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b>②</b>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의 현황을 현지에서 조사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자피해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b>③</b>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p>	<p><b>제8조(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b>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b>제9조(피해 보상의 절차 등) ①</b>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 농어업인은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b>②</b>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신청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공동부령으로 정하</p>	<p><b>제13조(피해 보상의 절차) ①</b>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피해 보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하며, 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 또는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피해 보상은 제외한다]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정부 보급종자 피해보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이하 "종자피해"라 한다)가</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의 범위와 기준 및 절차, 종자피해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피해 사실 확인 결과와 제10조에 따른 종자피해조사반의 피해 원인 조사 등을 검토하여 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p> <p><b>제10조(종자피해조사반 구성·운영)</b>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이 입은 피해(이하 "종자피해"라 한다)의 신속한 원인 규명 및 확산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종자피해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종자피해조사반은 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조사반원으로 구성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사반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조사반장은 조사반원 중에서</p>	<p>발생한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통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종자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종자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자료 등</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종자피해의 원인이 종자의 결함에 의한 것인지 여부 2. 종자피해의 발생 단계별 피해 규모 및 피해 정도 3. 그 밖에 피해 보상에 필요한 사항</p> <p>③ 제2항에 따라 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국립종자원은 국립종자원 지원장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p> <p>④ 산림용종자 또는 수산식물 종자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 농어업인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이장·통장(수산식물 종</p>

<p>종자산업법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종자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li> <li>2.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li> <li>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li> <li>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 하였던 사람으로서 종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li> <li>5. 종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종자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li> </ol> <p>④ 제1항에 따른 종자피해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종자피해 현장조사 및 시료 채취</li> <li>2. 종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지도</li> <li>3. 종자피해 원인 분석에 필요한 시험 및 자료조사</li> <li>4. 종자피해 원인 분석 및 종자결함 여부 판단</li> </ol>	<p>자의 경우는 어촌계장을 말한다)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가별·어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종자의 보증</b></p> <p><b>제24조(종자의 보증)</b> ① 고품질 종자 유통·보급을 통한 농림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종자관리사는 종자의 보증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② 제1항에 따른 종자의 보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는 보증(이하 "국가보증"이라 한다)과 종자관리사가 하는 보증(이하 "자체보증"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lt;개정 2013.3.23&gt;</p> <p><b>제25조(국가보증의 대상)</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p>	<p>5. 그 밖에 종자피해 원인 조사에 관한 사항</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b>제11조(국제종자검정기관)</b>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종자검정</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종자의 보증</b></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중의 대상으로 한다. &lt;개정 2013.3.23&gt;</p> <p>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종자를 생산하거나 제22조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p> <p>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농업단체등 또는 종자업자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경우</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종자검정기관이 보증한 종자에 대하여는 국가보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lt;개정 2013.3.23&gt;</p> <p><b>제26조(자체보증의 대상)</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보증의 대상으로 한다.</p> <p>1.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농업단체등 또는 종자업자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p> <p>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농업단체등 또는 종자업자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 외의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p>	<p>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p>1. 국제종자검정협회(ISTA)의 회원기관</p> <p>2. 국제종자검정가협회(AOSA)의 회원기관</p> <p>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종자검정기관</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하기 위하여 자체보증을 받으려는 경우</p> <p><b>제27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등) ①</b>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종자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자관리사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오(過誤)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④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종자관리사로 다시 등록할 수 없다.</p> <p>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gt;</p>	<p><b>제12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b> 종자관리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li> <li>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li> <li>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li> <li>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li> <li>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li> </ol>	<p><b>제14조(종자관리사의 등록신청 등) ①</b>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종자관리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격증 사본 1부</li> <li>2. 종자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1부</li> <li>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한다) 2장</li> </ol> <p>② 제1항에 따라 종자관리사 등록신청을 받은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신청인이 영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종자관리사 등록부에 등록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종자관리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b>제15조(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b></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b>제28조(포장검사)</b> ①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p>	<p>특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버섯 종균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버섯 종균을 보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b>적인 기준)</b>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b>제16조(종자관리사 등록증의 변경발급신청 등)</b> ① 종자관리사 등록증을 변경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종자관리사 등록증 및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한다) 1장을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종자관리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한다) 1장을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17조(검사 기준 및 방법 등)</b>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포장(圃場)검사(이하 "포장검사"라 한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종자관리사로부터 채종 단계별로 1회 이상 포장(圃場)검사를 받아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② 제1항에 따른 채종 단계별 포장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gt;</p>		<p>종자검사(이하 "종자검사"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이하 "재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용어의 정의</li> <li>2. 작물별 포장검사규격(다른 품종 또는 계통의 작물과 교잡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격리거리 및 격리시설과 그 밖에 보증된 품종성능을 갖춘 종자의 생산을 위한 포장조건을 포함한다)</li> <li>3. 작물별 종자검사규격</li> <li>4. 작물별 재검사규격</li> </ol> <p>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전수(全數) 또는 표본추출 검사방법에 따른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종자의 수요·공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기준 및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p> <p>④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증에 필요한 포장검사, 종자검사 또는 재검사를 담당하는 산림청, 국립종자원 또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자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한다.</p> <p><b>제18조(검사신청 등)</b> ① 포장검사 또는 종자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이 장에서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p> <p><b>제19조(재검사신청 등)</b> ①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종자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종자검사 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b>제29조(종자생산의 포장 조건)</b>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다른 품종 또는 다른 계통의 작물과 교잡(交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잡 위험이 있는 품종이나 작물의 재배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격리시설을 갖추는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포장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b>제30조(종자검사 등)</b> ①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제28조</p>		<p>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p> <p>③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가 재검사 전의 종자검사 결과와 달라 합격 또는 불합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재검사 결과를 재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제2항에 따른 포장검사의 기준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채종 단계별 종자검사를 받아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② 제1항에 따른 종자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종자검사를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채종 단계별 종자검사 또는 재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gt;</p> <p><b>제31조(보증표시 등)</b> ① 제28조에 따른 포장검사에 합격하여 제30조에 따른 종자검사를 받은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해당 보증종자에 대하여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작성일부터 3년(묘목에 관련된</p>		<p><b>제20조(보증표시)</b>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증표시는 별표 3과 같다.</p> <p><b>제21조(보증의 유효기간)</b>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작물별 보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기산일(起算日)은 각 보증종자를 포장(包裝)한 날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검사서류는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증표시 및 작물별 보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gt;</p> <p><b>제32조(보증서의 발급)</b>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보증표시를 한 보증종자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자가 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b>제33조(사후관리시험)</b>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목록 등 재대상작물의 보증종자에 대하여 사후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종자관리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채소: 2년</li> <li>2. 벼: 1개월</li> <li>3. 감자·고구마: 2개월</li> <li>4. 맥류·콩: 6개월</li> <li>5. 그 밖의 작물: 1년</li> </ol> <p><b>제22조(보증서의 발급)</b> ① 법 제32조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증서 발급신청서를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1항에 따라 보증서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증서를 해당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b>제23조(사후관리시험)</b>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의 기준 및 방법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gt;</p> <p><b>제34조(보증의 실효)</b> 보증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종자의 보증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증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였을 때</li> <li>2.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증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li> <li>3. 포장한 보증종자의 포장을 뜯거나 열었을 때. 다만, 해당 종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이나 종자관리사의 감독에 따라 분포장(分包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li>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을 받았을 때</li> </ol> <p><b>제35조(분포장 종자의 보증표시)</b> 제34조제3호 단서에 따라 분포장한 종자의 보증표시는 분포장하기 전에 표시되었던 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검사항목</li> <li>2. 검사시기</li> <li>3. 검사횟수</li> <li>4. 검사방법</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당 품종의 보증표시와 같은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p> <p><b>제36조(보증종자의 판매 등) ①</b>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 또는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제24조에 따라 종자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대 잡종의 친(親) 또는 합성품종의 친으로만 쓰이는 경우</li> <li>2. 증식 목적으로 판매하여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다시 전량 매입하는 경우</li> <li>3. 시험이나 연구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li> <li>4. 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li> <li>5. 직무상 육성한 품종의 종자를 증식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육성자가 직접 분양하거나 양도하는 경우</li> <li>6. 그 밖에 종자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가 취소된 품종이라 하더라도 취소일 전에 생산되었거나 생산 중인 해당 품종의 종자는 취소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말까지 판매하거나 보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 또는 보급 대상지역 및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 종자의 유통 관리</b></p> <p><b>제37조(종자업의 등록)</b> ①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이 종자</p>	<p><b>제13조(종자업의 시설기준)</b>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b>제14조(종자업의 등록 등)</b>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종자업의 시설과 인력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종자업의 주된 생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p>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 종자의 유통</b></p> <p><b>제24조(종자업 등록신청서 등)</b>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종자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 제13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li> <li>2.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영 제15조 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의 증식·생산·판매·보급·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lt;개정 2013.3.23&gt;</p>	<p>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종자업 등록을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자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종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p> <p><b>제15조(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b>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작물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화훼</li> <li>2. 사료작물(사료용 벼·보리·콩·옥수수 및 감자를 포함한다)</li> <li>3. 목초작물</li> <li>4. 특용작물</li> <li>5. 빵</li> </ol>	<p>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자업등록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p> <p><b>제25조(종자업 등록사항의 변경통지)</b>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통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종자업등록증</li> <li>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li> </ol> <p>② 제1항에 따른 변경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종자업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해 주어야 한다.</p> <p><b>제26조(종자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b> 종자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종자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b>제38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①</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 그 제출 시기·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gt;</p>	<p>6. 임목(林木) 7. 해조류 8. 식량작물(벼·보리·콩·옥수수 및 감자는 제외한다) 9. 과수(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자두·매실·참다래 및 감귤은 제외한다) 10. 채소류(무·배추·양배추·고추·토마토·오이·참외·수박·호박·파·양파·당근·상추 및 시금치는 제외한다) 11. 버섯류(양송이·느타리버섯·팽나무버섯·영지버섯·만가닥버섯·잎새버섯·목이버섯·팽이버섯·복령·버들송이 및 표고버섯은 제외한다)</p>	<p><b>제27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①</b>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1. 신고품종의 사진이나 신고품종의 사진</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1.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p> <p>2. 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③ 제1항에 따라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출원, 등록 등에 관하여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6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gt;</p>		<p>이 수록된 카탈로그 및 종자시료. 다만,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한다.</p> <p>2.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 1부(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한다)</p> <p>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심사서 1부(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만 해당한다)</p> <p>5. 「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검역합격 증명서 1부(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금지품만 해당한다)</p> <p>6.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최초의 생산 판매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p> <p>②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해당 신고인에</p>

<p>종자산업법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종자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표자명</li> <li>2. 법인 명칭</li> <li>3. 주소</li> </ol> <p>④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주요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품종 생산·수입 판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해당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증명서</li> <li>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li> <li>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li> </ol> <p>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을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b>제39조(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b>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 등록을 한 경우</li> <li>2.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li> <li>3.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1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등에 관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li> <li>4.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을 받지 아니한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li> </ol>		<p>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를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28조(종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b>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종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의 명칭, 처분내용, 처분기간 등이 적힌 게시문을 해당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5. 종자업자가 종자업 등록을 한 후 제 3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p> <p>6. 종자업자가 제37조제2항 본문을 위반 하여 종자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p> <p>7. 제38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p> <p>8. 제40조에 따라 수출·수입이 제한된 종자를 수출·수입하거나, 수입되어 국내 유통이 제한된 종자를 국내에 유통한 경우</p> <p>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아니한 외국산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p> <p>10. 제43조를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p> <p>11. 제45조제1항에 따른 종자 등의 조사나 종자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p> <p>12. 제45조제2항에 따른 생산이나 판매를 중지하게 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우</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자업자가 제1항</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계속 영업을 할 때에는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종자업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p> <p>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gt;</p> <p><b>제40조(종자의 수출·수입 및 유통 제한)</b>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생태계 보호 및 자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자의 수출·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b>제16조(수출입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b> ① 법 제40조에 따라 종자의 수출·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입된 종자에 유해한 잡초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li> <li>2. 수입된 종자의 증식이나 교잡에 의한 유전자 변형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 생태계 등 기존의 국내 생태계를 심각하</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b>제41조(수입적응성시험)</b>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그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게 파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3. 수입된 종자의 재배로 인하여 특정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p> <p>4. 수입된 종자로부터 생산된 농산물의 특수성분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p> <p>5. 재래종 종자 또는 국내의 희소한 기본종자의 무분별한 수출 등으로 인하여 국내 유전자원(遺傳資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해한 잡초종자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정 병해충의 종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b>제29조(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b>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수산물과학원장이나</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입적응성 시험 결과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품종 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gt;</p> <p><b>제42조(종자의 수입 추천)</b>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종자의 수입 추천을 받아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자의 수입 추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 및 추</p>		<p>제4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농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30조(심사기준)</b>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심사는 제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p> <p><b>제31조(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신청 등)</b></p> <p>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대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 제11조에 따른 국제종자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자보증서(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한다)</li> <li>2.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수입적응성시험</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gt;</p> <p><b>제43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b> 국가보증 대상이 아닌 종자나 자체보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p>		<p>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한다)</p> <p>②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추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수입추천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b>제32조(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물량 등)</b>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의 물량은 양허관세 추천계획의 범위 내로 하며,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자에게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신청량이 계획물량을 초과할 때에는 수입추천 대상자별로 계획물량을 배분할 수 있다.</p> <p><b>제33조(사후보고)</b>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을 받은 자는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 건별로 도착 및 통관 내역을 매 다음 달 5일까지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34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b> 법 제43조제3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이하 "품질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종자의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li> <li>2. 종자의 발아(發芽) 보증시한</li> <li>3.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품종의 명칭</li> <li>2. 종자의 발아율(버섯종균의 경우에는 종균 접종일)</li> <li>3. 종자의 포장당 무게 또는 낱알 개수</li> <li>4. 수입 연월 및 수입자명(수입종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를 해외에서 채종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li>5. 재배 시 특히 주의할 사항</li> <li>6. 종자업 등록번호(종자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li> <li>7.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품종보호 등록번호(「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호품종으로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li> <li>8.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번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종의 경우만 해당한다)</li> <li>9. 규격모 표시(묘목의 경우만 해당하며, 규격모의 규격기준 및 표시방법은 농림</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b>제44조(유통종자의 진열·보관의 금지)</b> 누구든지 국가보증 대상이 아닌 종자나 자체 보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자는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li> <li>2. 제43조에 따른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li> <li>3.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여 그 유통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자</li> </ol> <p><b>제45조(종자의 유통 조사 등)</b>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우량종자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종자업자나 종자를 매매하는 자의 영업장소·사무소 등에 출입하</p>		<p style="text-align: center;">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10. 유전자변형종자 표시(유전자변형종자의 경우만 해당하고, 표시방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p> <p><b>제35조(품질검사의 기준 등)</b> ①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p> <p>②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종</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여 그 시설, 관계 서류나 장부, 종자 등을 조사하거나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종자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을 위반하여 생산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자를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수거한 종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거 당시 그 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에게 작성한 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수거한 종자를 1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기 곤란한 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자는 조사를 마친 후 제4항을 준용하여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p>		<p>자업자나 종자를 매매하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b>제36조(수거한 종자의 보관)</b> ①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수거한 종자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종자의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관 대상 종자를 담은 봉투 또는 용기에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li> <li>2. 보관 대상 종자가 변질되거나 품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할 것</li> <li>3.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장고의 온도 및 상대습도 등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것</li> </ol> <p><b>제37조(관계 공무원의 증표)</b> 법 제45조제5</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제3항 본문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종자를 종자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수거 당시 그 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에게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 당시 그 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가 인수를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 목적·시간 및 조사자 신분 등의 사항을 서면에 적어 내주어야 한다.</p> <p>⑥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⑦ 제3항에 따른 종자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gt;</p> <p><b>제46조(종자시료의 보관)</b>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p>		<p>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p> <p><b>제38조(종자시료의 보관)</b> ①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자는 일정량의 시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gt;</p> <p>1. 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p> <p>2. 제38조에 따라 신고한 품종의 종자</p> <p>② 제1항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gt;</p> <p><b>제47조(분쟁대상 종자의 시험·분석 등) ①</b> 종자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당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분쟁대상 종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험·분석을 신청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② 분쟁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시험·분석을 신청할 때에는 분쟁당사자가 공동으</p>	<p><b>제17조(유통종자의 분쟁) 법 제47조제3항</b> 전단에서 "공동 시료채취가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이 공동 시료채</p>	<p>제46조제1항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종자시료의 보관·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관리책임자는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종자시료의 보관 및 관리 방법에 따라 종자시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종자시료가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제출을 요청한 장소에 종자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39조(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신청) ①</b>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시험·분석신청서에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분쟁대</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로 분쟁대상 종자의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한 후 그 종자시료를 밀봉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③ 분쟁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공동 시료채취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시료의 채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험·분석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lt;개정 2013.3.23&gt;</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료채취의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료를 채취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시료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시험·분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분석을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취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p> <p>2. 제1호에 따른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이 시료채취 현장에 동행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공동 시료채취를 거부하는 경우</p>	<p>상 종자에 대한 시료의 채취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시료채취신청서를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40조(보상 청구 등)</b> ①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금 산출 내역서 1부</li> <li>2.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시험·분석 결과통보서 부분 1부</li> </ol> <p>②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은 종자업자는 보상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보상 청구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③ 종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에 따른 보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쪽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그 부분을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에게 제5항에 따른 시험·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⑦ 분쟁대상 종자와 관련한 피해가 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종자업자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b>제48조(분쟁의 조정)</b> ① 제47조제7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분쟁당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gt;</p>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41조(분쟁조정절차 등)</b> ①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이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분쟁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할 때까지의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내용을</p>

<p>종자산업법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종자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p> <p>2. 분쟁조정 신청건의 심사·조정예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p> <p>③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분쟁조정을 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 분쟁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은 조서에 기재한다.</p> <p>⑤ 분쟁조정예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국립종자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며,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p> <p>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종자와 관련된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p> <p>2. 종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p>

<p style="text-align: center;"><b>중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중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중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제6장 보칙</b></p> <p><b>제49조(사용문자)</b> 이 법에 따른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한자 및 외국문자로 적어야 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3.3.23&gt;</p>		<p>있거나 있었던 사람</p> <p>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p> <p>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분쟁조정에 관한 전문가</p> <p>5. 그 밖에 중자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⑥ 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등 분쟁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림청장, 국립중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6장 보칙</b></p> <p><b>제42조(사용문자)</b> 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영어로 쓸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영어로 쓸 경우에는 한글을 소리 나는 대로 함께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명</li> <li>2. 품종명칭</li> <li>3. 전문용어(한글로 표기할 적절한 용어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b>제50조(청문)</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2조제4항에 따른 진흥센터의 지정 취소</li> <li>2. 제27조제3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의 등록 취소</li> <li>3.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종자업 등록의 취소</li> </ol> <p><b>제51조(수수료)</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6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의 등재 신청을 하려는 자</li> <li>2. 제19조제2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외국인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li> <li>5. 외국에 있는 주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li> </ol> <p><b>제43조(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b> ① 법제51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은 별표 6과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3.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p> <p>4. 제32조에 따른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p> <p>5. 제38조제1항에 따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p> <p>6.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으려는 자</p> <p>7.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p> <p>8. 제48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p> <p>9.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p> <p>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gt;</p> <p><b>제52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b>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lt;개정 2013.3.23&gt;</p>		<p>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p> <p><b>제44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b>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p>

<p style="text-align: center;"><b>중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중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중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③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잘못 납부된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즉시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⑤ 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납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p> <p>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p> <p>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p> <p>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p> <p>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p> <p>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p> <p>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p> <p>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수수료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li> <li>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li> <li>③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li> <li>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li> <li>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li> </ol> </li> <li>④ 수수료 면제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면제 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제1항에 따른 면제를 받지 못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그 면제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 대상 행위를 할 당시에 수수료 면제 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4호서식의 수수료 면제신청서를 그 반환의 대상이 되는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45조(반환할 수수료의 대체)</b> ① 법 제52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반환금은 납부한 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다른 수수료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수료는 대체신청이 수리된 날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p> <p>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의 대체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b>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b>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b>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b>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하며, 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li> <li>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li> <li>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의 등재</li> <li>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접수</li> <li>5. 법 제17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품종목록 등재신청의 거절 및 품종목록 등재 등</li> <li>6. 법 제18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li> <li>7.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li> </ol>	<p><b>제46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b> 법 제53조제2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li> <li>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li> <li>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li> <li>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li> <li>5.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자산업 관련 협회</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8.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 절차 등의 통지</p> <p>9.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처분</p> <p>10.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취소결정 이 유 고지 및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p> <p>11.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취소결정 등본의 송달 및 취소결정의 공고</p> <p>12. 법 제21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서류의 보존</p> <p>1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자의 보증</p> <p>1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의 등록</p> <p>15.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및 업무정지 명령</p> <p>16.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포장검사</p> <p>17. 법 제30조에 따른 채종 단계별 종자 검사 및 재검사</p> <p>18. 법 제32조에 따른 보증서의 발급</p> <p>19.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의 실시</p> <p>20.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가 취소된 품종에 대한 판매 또는</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보급의 허용 및 대상지역 등의 공고</p> <p>2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품종의 종자 생산·수입 판매 신고의 수리</p> <p>2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요 사항 변경 신고의 수리</p> <p>23. 법 제40조에 따른 종자의 수출·수입 제한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 유통 제한</p> <p>24.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적응성 시험의 실시</p> <p>25.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종자 등의 조사 또는 품질검사 및 종자 수거</p> <p>26.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중지 명령 및 종자 수거 명령</p> <p>27.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수거한 종자의 보관, 반환 또는 폐기</p> <p>28.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종자의 반환 또는 폐기</p> <p>29. 법 제46조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관리</p> <p>30.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쟁대상 종자의 시험·분석 신청 접수</p> <p>31.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분쟁대상 종</p>	

<p>종자산업법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종자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자의 시료 채취 신청 접수</p> <p>32.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에 대한 시료 채취 명령</p> <p>33.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시험·분석 결과의 통지</p> <p>34. 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시험·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p> <p>35.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p> <p>36.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청문</p> <p>37.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p> <p>38. 법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p> <p>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p> <p>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p> <p>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에의 등재</p> <p>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의 등</p>	

<p style="text-align: center;"><b>중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중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중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재신청 접수</p> <p>5. 법 제17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품종목록 등재신청의 거절 및 품종목록 등재 등</p> <p>6. 법 제18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p> <p>7.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p> <p>8.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 절차 등의 통지</p> <p>9.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처분</p> <p>10.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취소결정 이 유 고지 및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p> <p>11.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취소결정의 등본 송달 및 취소결정 공고</p> <p>12. 법 제21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서류의 보존</p> <p>1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자결합 피해의 보상</p> <p>1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중자피해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p> <p>1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1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자의 보증</p> <p>17.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의 등록</p> <p>18.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및 업무정지 명령</p> <p>19.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포장검사</p> <p>20. 법 제30조에 따른 채종 단계별 종자 검사 및 재검사</p> <p>21. 법 제32조에 따른 보증서의 발급</p> <p>2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의 실시</p> <p>23.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가 취소된 품종에 대한 판매 또는 보급의 허용 및 대상지역 등의 공고</p> <p>2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품종의 종자 생산·수입 판매 신고의 수리</p> <p>2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요 사항 변경 신고의 수리</p> <p>26. 법 제40조에 따른 종자의 수출·수입 제한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 유통 제한</p> <p>27.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종자 등의 조사 또는 품질검사 및 종자 수거</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28.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중지 명령 및 종자 수거 명령</p> <p>29.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수거한 종자의 보관, 반환 또는 폐기</p> <p>30.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종자의 반환 또는 폐기</p> <p>31. 법 제46조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관리</p> <p>3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쟁대상 종자의 시험·분석 신청 접수</p> <p>33.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분쟁대상 종자의 시료 채취 신청 접수</p> <p>34.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에 대한 시료 채취 명령</p> <p>35.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시험·분석 결과의 통지</p> <p>36. 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시험·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p> <p>37.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p> <p>38.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청문</p> <p>39. 법 제51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수수료 징수</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40. 법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p> <p>41. 별표 4 제4호에 따른 종자피해의 판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결정 및 고시</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9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신청서의 접수</li> <li>2. 제9조제2항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의 작성</li> </ol> <p>④ 산림청장 및 국립종자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중 농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1. 법 제41조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실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p> <p>2. 법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수료 (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징수</p> <p><b>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b>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1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p>1. 법 제16조에 따른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에 관한 사무</p> <p>2. 법 제27조에 따른 종자관리사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사무</p> <p>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종자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에 관한 사무</p> <p>4. 법 제42조에 따른 종자의 수입 추천 사무</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제7장 벌칙</b></p> <p><b>제54조(벌칙)</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보호품종 외의 품종에 대하여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재되거나 제38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수출하거나 수입한 자</li> <li>2.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관리사 업무를 수행한 자</li> <li>3. 제32조에 따른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li> <li>4.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증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li> <li>5.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li> <li>6.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li> </ol>	<p>5. 법 제47조에 따른 분쟁대상 종자의 시험·분석에 관한 사무</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여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p> <p>7.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종자업을 계속 하거나 영업정지를 받고도 종자업을 계속 한 자</p> <p>8. 제40조를 위반하여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수입된 종자를 유통시킨 자</p> <p>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한 자</p> <p>10.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p> <p>11. 제47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료채취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b>제55조(양벌규정)</b>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제56조(과태료)</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6조제2항 또는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재되거나 신고되지 아니한 품종 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li> <li>2.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li> <li>3. 제43조를 위반하여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li> <li>4. 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li> </ol> <p>②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종자를 진열·보관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lt;개정 2013.3.23&gt;</p>	<p><b>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b>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5024호, 1995.12.6&gt;</b></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b> 주요농작물종자법 및 종묘관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p> <p><b>제3조(특허법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b>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법 제3조,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법 제157조, 제165조제3항 내지 제6항, 제166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2월 28일까지는 이 법 시행당시의 특허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본다.</p> <p><b>제4조(이 법 시행당시에 알려진 품종에 관한 경과조치)</b> ①이 법 시행당시 알려진 품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종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출원을</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15576호, 1997.12.31&gt;</b></p> <p><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b>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요농작물종자법시행령</li> <li>2. 종묘관리법시행령</li> </ol> <p><b>제3조(종자관리사에 관한 경과조치)</b>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종묘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종묘업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자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b>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b>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시행령 또는 종묘관리법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15750호, 1998.4.1&gt;</b></p> <p><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1272호, 1998.1.24&gt;</b></p> <p><b>제1조(시행일)</b>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b> 다음 각호의 농림부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요농작물종자법시행규칙</li> <li>2. 종묘관리법시행규칙</li> </ol> <p><b>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b>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시행규칙 또는 종묘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p> <p><b>제4조(품종생산·판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b>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 제2조제1호 또는 종묘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물외의 작물의 품종을 이 규칙 시행후 1년이내에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생산·판매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일부터 2년간 사진 및 종자시료의 제출을 유예한다.</p> <p><b>제5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에 관한 경과조치)</b>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p> <p>1. 종전의 종묘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등록이 되어 있는 품종</p> <p>2.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우량종자의 품종</p> <p>3. 산림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품종</p> <p>4. 외국에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된 품종</p> <p>5. 육성자 및 최초유통일자에 대한 증거가 있는 품종</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은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해당 품종이 다음 각호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p> <p>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종인 경우에는 그 품종의 등록일</p> <p>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품종인 경우에는 그 종자위원회의 심의결정일</p> <p>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종인 경</p>	<p>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15864호, 1998.8.11&gt;</b></p> <p><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b>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b> ①종자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2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중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25호, 제30호 내지 제43호, 제45호 내지 제47호, 제49호 내지 제51호, 제53호 내지 제58호, 제60호 내지 제65호의 권한을 종자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p> <p>②내지 ⑥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16127호, 1999.2.26&gt;</b></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물종자법 제2조제1호 또는 종묘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물의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한 종자의 용기 또는 포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간 이 규칙에 의한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한 종자의 용기 또는 포장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p> <p>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 제2조제1호 또는 종묘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물외의 작물의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한 종자의 용기 또는 포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간 이 규칙에 의한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한 종자의 용기 또는 포장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p> <p><b>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b>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 또는 종묘관리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규칙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7조 생략</p> <p><b>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b> 이 규칙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우에는 그 품종의 등록일</p> <p>4.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품종인 경우에는 그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일</p> <p>5.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품종인 경우에는 그 최초유통일</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은 당해 품종보호출원일전에 행하여진 실시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은 경우 그 품종보호출원일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보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p> <p>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b>제5조(품종명칭등록에 관한 경과조치)</b> 부칙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종의</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16442호, 1999.6.30&gt;</b>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16757호, 2000.3.24&gt;</b> <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16932호, 2000.8.1&gt;</b> <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17280호, 2001.6.30&gt;</b> <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18311호, 2004.3.12&gt;</b> <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p>	<p>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요농작물 종자법시행규칙 또는 종묘관리법시행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1312호, 1999.2.2&gt;</b>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1335호, 1999.8.6&gt;</b>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1360호, 2000.3.27&gt;</b> <b>제1조(시행일)</b>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b>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b>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및 인삼협동조합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품종명칭은 제1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품종명칭으로 본다.</p> <p><b>제6조(종묘등재등에 관한 경과조치)</b>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생산한 우량품종과 종전의 종묘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품종 중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의 등재대상작물에 해당하는 품종인 경우에는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공고된 품종으로 보며, 품종목록의 등재대상작물외의 품종인 경우에는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품종으로 본다.&lt;개정 1996.8.8&gt;</p> <p><b>제7조(종자보증에 관한 경과조치)</b>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생산한 우량품종 중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의 등재대상작물에 해당하는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는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보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lt;개정 1996.8.8&gt;</p> <p><b>제8조(종자업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b>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종묘관리법에 의하여 종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37조제1</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18312호, 2004.3.17&gt;</b>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19513호, 2006.6.12&gt;</b> <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19639호, 2006.8.4&gt;</b> <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20402호, 2007.11.30&gt;</b> <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20506호, 2007.12.31&gt;</b>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20575호, 2008.1.31&gt;</b> <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p>	<p>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1396호, 2001.8.3&gt;</b>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1463호, 2004.3.12&gt;</b> <b>제1조(시행일)</b>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1항제9호의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에 관한 적용례)</b> 제121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후 최초로 품종보호출원된 종자의 품질표시에 관한 분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1574호, 2007.11.30&gt;</b> <b>제1조(시행일)</b>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1582호, 2008.2.4&gt;</b> <b>제1조(시행일)</b>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 제104조</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종묘관리법에 의하여 종묘상의 신고를 한 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에 의하여 종자상의 신고를 한 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자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된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관리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p> <p><b>제9조(종자의 수출입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b> ①이 법 시행당시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는 수입품종에 대하여는 제138조제1항의 적용은 2년간 이를 유예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에 의하여 수출입신고를 한 자는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의 수출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 또는 종묘관리법에 의하여 종자의</p>	<p>시행한다. 다만, 제7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정부보급종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제72조제4항제42호의2부터 제42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처분보상금에 관한 적용례)</b>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처분하는 국유품종보호권부터 적용한다.</p> <p><b>제3조(농민의 자가채종에 관한 적용례)</b>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을 최초로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b>제4조(심사관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b>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제2항(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는 제34조제2항(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p> <p><b>제5조(국제종자검정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b>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제3호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한 외국의 종자검정기관은 제44조제3호의 개정규정</p>	<p>및 제107조의 개정규정 중 정부보급종의 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품종보호 대상작물에 관한 경과조치)</b>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부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한 품종보호 대상작물은 제20조제2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된 것으로 본다.</p> <p><b>제3조(검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b>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부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한 검사기준은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된 것으로 본다.</p> <p><b>제4조(보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b>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가 보증의 유효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제10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되거나 정한 것으로 본다.</p> <p><b>제5조(심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b>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부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한 심사기준은 제1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된 것으로 본다.</p> <p><b>제6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b></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수입추천을 받은 자는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b>제10조(수입적응성시험에 관한 경과조치)</b>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 또는 종묘관리법에 의하여 국내적응성시험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종자는 제1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종자로 본다.</p> <p><b>제11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에 관한 경과조치)</b>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종묘관리법에 의하여 종묘의 포장에 품질의 표시를 한 자는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p> <p><b>제12조(종자기금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b>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에 의하여 설치된 종자기금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종자기금으로 본다.</p> <p><b>제13조(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b>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 또는 종묘관리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외국의 종자검정기관으로 본다.</p> <p><b>제6조(수출입종자의 국내 유통제한에 관한 경과조치)</b>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0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한 기준 등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등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20677호, 2008.2.29&gt;</b></p> <p><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22365호, 2010.9.1&gt;</b></p> <p><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종자관리사 보유에 관한 경과조치)</b> 이 영 시행 당시 표고버섯의 종자에 대하여 종자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8조제1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자관리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p> <p><b>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b></p>	<p><b>치)</b>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1호, 2008.3.3&gt;</b></p> <p><b>제1조(시행일)</b>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55호, 2008.12.31&gt;</b></p> <p><b>제1조(시행일)</b>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145호, 2010.9.1&gt;</b></p> <p><b>제1조(시행일)</b>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종자의 품질표시에 관한 적용례)</b>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판매하거나 보급하는 종자부터 적용한다.</p> <p><b>제3조(보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b></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5153호, 1996.8.8&gt;</b> <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5170호, 1996.12.12&gt;</b> <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5453호, 1997.12.13&gt;</b> <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5668호, 1999.1.21&gt;</b> <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b>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b>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23488호, 2012.1.6&gt;</b> <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23493호, 2012.1.6&gt;</b>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23781호, 2012.5.14&gt;</b> 이 영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24155호, 2012.10.29&gt;</b> <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24455호, 2013.3.23&gt;</b> <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자검사를 받았거나 종자검사를 신청한 종자에 대한 보증의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제10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243호, 2012.1.13&gt;</b> 이 규칙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277호, 2012.5.17&gt;</b>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326호, 2012.12.11&gt;</b>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20호, 2013.3.24&gt;</b>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49호, 2013.10.18&gt;</b> <b>제1조(시행일)</b>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b>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b>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6190호, 2000.1.21&gt;</b></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종자기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b> 이 법 시행당시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종자기금의 채권·채무 등 일체의 권리·의무 및 재산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 이를 승계한다.</p> <p><b>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b>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중 제12호를 삭제한다.</p> <p><b>제4조(기금폐지에 따른 다른 법률과의 관계)</b>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종자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6374호, 2001.1.26&gt;</b></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과수 및 임목품종의 신규성에 관한</b></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24563호, 2013.5.31&gt;</b></p> <p><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b>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종자관리사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p> <p><b>제3조(국제종자검정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b> 대통령령 제20575호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제3호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한 외국의 종자검정기관은 제11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외국의 종자검정기관으로 본다.</p> <p><b>제4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b> 대통령령 제15576호 종자산업법시행령 시행 당시 종전의 「종묘관리법시행령」에 따른 종묘업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자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정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2014년 1월 1일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b>제3조(보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b>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증의 유효기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종자관리사가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되거나 정한 것으로 본다.</p> <p><b>제4조(종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b>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b>제5조(시험·분석에 관한 경과조치)</b>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5조에 따른 대비시험의 신청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험·분석의 신청으로 본다.</p> <p><b>제6조(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b>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b>경과조치)</b> 이 법 시행당시 종자 또는 수확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과수 또는 임목의 신규성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b>제3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b> 이 법 시행당시 등록 출원된 품종명칭등록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제111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6626호, 2002.1.26&gt;</b></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6999호, 2003.12.11&gt;</b></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3항·제4항,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9조, 제40조 및 제16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5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로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종자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험·분석신청 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b>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b>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중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중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중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b>제2조(임시보호의 권리에 관한 경과조치)</b> 부칙 제1항 단서규정의 시행당시 품중보호출원된 품종의 임시보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3항·제4항,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9조, 제40조 및 제16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7678호, 2005.8.4&gt;</b></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8597호, 2007.8.3&gt;</b></p> <p>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8852호, 2008.2.29&gt;</b></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p>		

<p style="text-align: center;"><b>증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증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증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9401호, 2009.1.30&gt;</b></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10332호, 2010.5.31&gt;</b></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처분통지서 송달에 관한 적용례)</b>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보정명령부터 적용한다.</p> <p><b>제3조(전자문서에 의한 품종보호에 관한 적용례)</b>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품종보호 출원부터 적용한다.</p> <p><b>제4조(무권리자의 품종보호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관한 적용례)</b> 제20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품종보호 출원부터 적용한다.</p> <p><b>제5조(증자시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b></p>		

<p style="text-align: center;"><b>중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중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중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① 제26조제1항제9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품중보호를 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② 제11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품중목록을 등재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③ 제1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④ 제1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자시료를 보관·관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b>제6조(거절결정의 통지에 대한 적용례)</b>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p> <p><b>제7조(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적용례)</b> 제9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p> <p><b>제8조(품종명칭 등록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b> 제10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품종명칭 등록을 출원한 자부터</p>		

<p style="text-align: center;"><b>증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증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증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적용한다.</p> <p><b>제9조(증자보증 관련 검사서류 보관에 관한 적용례)</b> 제131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증한 종자부터 적용한다.</p> <p><b>제10조(증자보증 생략에 관한 적용례)</b> 제13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성자가 직접 분양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b>제11조(유통종자의 분쟁에 관한 적용례)</b> 제14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유통종자의 분쟁부터 적용한다.</p> <p><b>제12조(침해분쟁 조정 관련 조정기간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b> 제158조의2제4항 단서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조정부터 적용한다.</p> <p><b>제13조(직권조정결정에 관한 적용례)</b> 제158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조정부터 적용한다.</p> <p><b>제14조(심판 청구기간의 연장에 관한 경과 조치)</b> 이 법 시행 당시 청구된 심판사건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p>		

<p style="text-align: center;"><b>중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중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중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b>제15조(품종보호 출원공고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b> 이 법 시행 당시 품종보호 출원되어 심사 중인 품종에 관하여는 제19조 단서, 제20조 단서,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1항, 제38조,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제95조 및 제16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b>제16조(거절사정 및 품종보호사정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b>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에 따른 “거절사정”은 “거절결정”으로, 종전의 제46조에 따른 “품종보호사정”은 “품종보호결정”으로 각각 본다.</p> <p><b>제17조(중자업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b>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7조 또는 제139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한 중자업 등록·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는 이 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한 것으로 본다.</p> <p><b>제18조(수입종자에 관한 경과규정)</b> 이 법 시행 당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종자에 관하여는 제140조제2항의 개정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b>제1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b>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10842호, 2011.7.14&gt;</b>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11076호, 2011.11.14&gt;</b> <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b>제2조(종자 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관한 적용례)</b>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종자 결함으로 인한 피해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11458호, 2012.6.1&gt;</b> <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b>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b>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b>제3조(종자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b> 이 법 시행 당시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하거나 종자를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종자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p> <p><b>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b>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b>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b>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5조제1항제3호 중 “「종자산업법」을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한다. 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및 제59조제1호 중 “「종자산업법」 제121조”를 각각 “「종자산업법」 제22조”로 한다. ③ 법률 제1088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4조제2항제3호 중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한다.</p> <p>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42호 중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하고, 제6조제39호 중 “「종자산업법」 제169조, 제171조 및 제173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74조에 규정된 범죄”를 “「종자산업법」 제54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된 범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 및 제133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35조에 규정된 범죄”로 한다.</p> <p>⑤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1항제15호 중 “「종자산업법」 제111조”를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9조”로 한다.</p> <p>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1조의2제1항제3호 중 “「종자산업법」”을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한다.</p> <p>⑦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6조의6제1항 중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을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자산업법」 제137조제2항”을 “「종자산업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p> <p><b>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b>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lt;제11704호, 2013.3.23&gt;</b></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458호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 개정규정을 개정한 부분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부처 간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b>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b> [법률 제11704호, 2013.3.23. 일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4563호, 2013.5.31 전부개정, 2013.6.2.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b>종자산업법 시행규칙</b>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시행]</p>
<p>림수산물부 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농림수산물부 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행위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b>제3조(종자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 조치)</b>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종자위원회는 제15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같은 조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로 본다.</p>		



#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조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 다. 처분권자는 최근 3년간 종자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종자산업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 제6조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6조 제4항제2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법 제6조 제4항제3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조 제4항제4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별표 2]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분	지정기준
1. 조직	종자업자에 대한 육종기술 지원, 창업 및 경영 지원, 대외시장 진출 지원 등 진흥센터의 설치 목적 구현을 위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종자산업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일 것
2. 인력	<p>가. 종자업자의 품종 육성을 위한 육종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p> <p>1) 농학, 원예학, 임학, 수산학, 생물학, 생명공학 등 종자산업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2) 분자표지 분석, 성분 분석 또는 병리 검정 등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p> <p>나. 창업 및 경영 지원, 대외시장 진출 지원, 지식재산권 관리 등 경영 지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p> <p>1) 경영학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또는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다만,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또는 「변리사법」에 따른 사무소,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인력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p>
3. 시설	<p>종자업자에 대한 육종기술 지원 및 경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p> <p>가. 분자표지 분석, 성분 분석 또는 병리 검정 등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다만, 분자표지 분석, 성분 분석 또는 병리 검정 등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p> <p>나. 경영 지원 관련 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 사무실 및 회의장</p>

[별표 3]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 다. 처분권자는 최근 3년간 종자개발기술 지원, 성분 분석 및 경영지원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종자산업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 제12조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진흥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2조 제4항제2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법 제12조 제4항제3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 제4항제4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별표 4]

**종자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제8조 및 제9조제3항 관련)**

1. 파종 전 피해가 종자의 결함으로 확인된 경우

피해 유형	보상 범위	보상기준
가. 무게, 종자 수(數) 미달 나. 이물 혼입 다. 부패, 변질	가. 종자 교환 나. 종자대금 환불	종자대금은 법 제22조에 따라 생산한 종자를 공급한 해의 가격으로 한다.

2. 종자의 파종 또는 육묘(育苗) 상태에서 피해가 종자의 결함으로 확인된 경우

피해 유형	보상 범위	보상기준
가. 발아 불량 나. 다른 품종 혼입 다. 생육 장애	가. 종자 교환 나. 종자대금 환불 다. 인건비, 자재비	가. 종자대금은 법 제22조에 따라 생산한 종자를 공급한 해의 가격으로 한다. 나. 인건비 및 자재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산물 생산비 또는 소득조사 관련 통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나목의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통계자료와 직접 조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종자피해로 인정하는 경우: 제2호의 보상기준을 적용한다.

4. 종자피해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

종자업의 시설기준(제13조 관련)

1. 채소

구분	철재 하우스	육종(育種) 포장(圃場)	실험실
규모	330㎡ 이상	30a 이상	-
장비	정선기, 건조기, 포장기, 수분측정기 및 발아시험기 각 1대 이상(임차사용을 포함한다)		

비고

- 가. 육묘만을 하는 경우에는 철재 하우스에 관한 기준만 적용한다.
- 나.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하거나 종자를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장비에 관한 기준만 적용한다.

2. 과수

구분	육묘 포장	대목 포장(臺木圃場)	어미나무
규모	100a 이상	30a 이상	결실되는 나무 품종당 5그루 이상
구비조건		자기 소유이거나 5년 이상의 임차권 등 사용권을 확보할 것	자기 소유일 것

비고

- 가. 감귤의 육묘만을 하는 경우에는 대목 포장에 관한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 나. 「농촌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대목 포장의 자기 소유를 갈음하여 임차권 등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임차권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다. 종자 관련 검정기관이 병해충이 없음을 인정한 어미나무에서 생산된 접수(接樹)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어미나무를 구비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화훼

구분	철재 하우스	육종 포장	실험실
규모	330㎡ 이상	30a 이상	100㎡ 이상
구비조건			현미경(500배 이상) 1대
장비	정선기, 건조기 및 포장기 각 1대 이상(종자류의 경우만 해당한다)		

비고

- 가. 교배 등의 방법으로 육종 포장에서만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실험실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나. 조직배양 등의 방법으로 실험실에서만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철재 하우스 및 육종 포장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다.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하거나 종자를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장비에 관한 기준만 적용한다.

4. 버섯

구분	실험실	준비실	살균실	냉각실	접종실	배양실	저장실
규모	16.5㎡ 이상	49.5㎡ 이상	23.0㎡ 이상	16.5㎡ 이상	13.2㎡ 이상	165.0㎡ 이상	33.0㎡ 이상
구비조건	가. 현미경(1,000배 이상) 1대 이상 나. 냉장고(200ℓ 이상) 1대 이상 다. 소형 고압 살균기 1대 이상 라. 항온기 2대 이상 마. 건열 살균기 1대 이상	가. 수도 시설 설치 나. 입병기 1대 다. 배합기 1대 라. 자속술(양 송이 생산자만 해당한다)	가. 고압 살균기 1) 압력: 15~20LPS 2) 규모: 1회 600병 이상 나. 보일러: 0.4톤 이상	에어컨시설 또는 냉각시설	가. 무균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시설 나. 자외선 등 설치	실온 20~25℃로 조절할 수 있는 항온 장치시설	실온 1~5℃로 조절할 수 있는 냉각시설

5. 식량작물(법 제15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 대상작물만 해당한다)

구분	철재 하우스	육종 포장	실험실
규모	330㎡ 이상	30a 이상	
장비	현미경(1,500배 이상), 발아시험기, 수분측정기, 정선기, 건조기 및 포장기 각 1대 이상(임차사용을 포함한다)		

- 가. 감자의 경우에는 수분측정기 및 건조기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 나.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하거나 종자를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장비에 관한 기준만 적용한다.

6. 그 밖의 작물(사료작물 및 특용작물 등)

구분	철재 하우스	육종 포장	실험실
규모		10a 이상	
장비	정선기, 건조기 및 포장기 각 1대 이상(종자류의 경우만 해당한다)		

- 비고 :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하거나 종자를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장비에 관한 기준만 적용한다.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5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재되지 않은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호	100	300	500	700	1,000

나.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2호	100	300	500	700	1,000
다.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되지 않은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호	100	300	500	700	1,000
라.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3호	100	300	500	700	1,000
마. 법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종자를 진열·보관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10	30	50	70	100
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일, 조사·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4호	100	300	500	700	1,000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가. 강의실: 내벽(内壁) 간 면적(바닥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필요시 칸막이(불연재) 사용이 가능할 것

※ 바닥면적 산정: 복도·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은 제외하며, 계산 결과 소수점 미만의 수가 있을 때에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분자표지 실습실

1) 면적: 내벽 간 면적(바닥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고, 필요시 칸막이(불연재) 사용이 가능할 것

2) 교육장비로서 분자생물학 관련 장비 및 기기: 원심분리기, 중합효소연쇄반응기(Polymerase Chain Reaction), 전기영동 장치, 마이크로피펫, 이미지 분석장비 및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기(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를 갖추어 것

다. 병리검정 실습실

1) 면적: 내벽 간 면적(바닥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고, 필요시 칸막이(불연재) 사용이 가능할 것

2) 교육장비로서 병리검정 관련 장비 및 기기: 현미경, 원심분리기, 배양기 등을 갖추어 것  
 라. 현장학습장: 학습자를 수용하여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농지, 온실 등)을 갖추어 것

마. 화장실: 남녀 구분이 있고, 교육과정 규모에 적절할 것

바. 급수시설: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사. 방음시설,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학습에 방해되지 않고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아. 조명시설: 야간 강의 시 책상면 및 칠판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자. 소방시설: 「소방법」에 따른 소방기구,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것

2. 전문 교수요원

○ 교육과목별 전문 교수요원은 아래 표의 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할 것

교육과목	전문 교수요원 자격기준
가. 종자의 이해	1) 종자학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 등에서 강의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종자학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 연구소, 종자회사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종자산업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4)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관련 분야 업무담당 임직원
나. 품종개발, 등록 및 관리	
다. 프로그램 개발	
라. 종자생산, 품질관리 및 현장학습	
마.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3.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 교육프로그램은 아래 표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할 것

구성의 순서	구성의 세부 항목
가. 제목	○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포괄하는 대표성 있는 제목을 선정
나. 소개	○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배경, 기본목표 및 기대효과
다. 요약	○ 교육프로그램의 활동과 관련된 라목의 진행과정과 마목의 평가를 간략히 기술하고 핵심단어를 제시
라. 진행과정	1)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진행과정에 대한 순서(시간) 및 진행 시 유의사항 2) 교육프로그램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대상, 교육장소, 교육 가능 인원, 교육 소요시간, 준비물 및 주요 개념 3)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목표 4) 교육프로그램 활동에 관한 배경 및 지식에 대한 정보 5)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기대효과 6) 교육프로그램 활동지 및 활동자료(CD 등으로 제작 가능) ※ 여러 개의 활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활동에 대하여 위의 내용을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
마. 평가	1) 교육프로그램의 평가방법에 대한 서술 2) 교육진행자 및 참가자의 평가지(평가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방법 및 보고 양식 제시
바. 참고자료	1) 주요 소재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자세히 서술 2) 그 밖에 교육프로그램 또는 활동 진행 시에 참고할 만한 서적 또는 웹 사이트 주소 등을 제시
사. 단어설명	○ 교육프로그램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던 단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 설명

4. 교육과정

가. 단계별 교육과정은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총 100시간 이상(실습 및 현장학습 포함)이 되도록 구성할 것

나. 교육과정은 분야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교육시간을 준수하되, 단계별 교육시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실습 및 현장학습 시간이 전체 교육시간의 4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구성할 것

다. 분야별 교육과정

1) 육종과정

단계별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1단계 (품종 개발)	가) 육종의 기초	(1) 식물 육종의 역사 및 개요 (2) 식물 유전자원과 활용 (3) 유전자의 연관과 육종 (4) 변이와 선발 (5) 분자표지의 활용	50시간 (이론 80 퍼센트, 실습 20 퍼센트)
	나) 품종의 개발	(1) 식물 육종의 목표 및 과정 (2) 다양한 육종의 원리와 과정 (3) 생산성 및 지역적응성 검정	
2단계 (품종 보급)	가) 품종의 등록 및 관리	(1) 「종자산업법」의 개요 및 주요 제도 (2)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국제식물신품종 보호 동향 (3) 「특허법」에 따른 식물특허의 보호	30시간 (이론 60 퍼센트, 실습 40 퍼센트)
	나) 신품종의 유지, 증식 및 보급	(1) 신품종의 증식 및 채종 (2) 신품종의 특성 유지 (3) 종자의 갱신	
3단계	실습 및 현장학습	(1) 분자표지 분석 및 활용법 실습 (2) 병리검정 및 기능성 물질 분석 실습 (3) 종자 관련 기관 및 종자회사 현장 견학	20시간 (이론 10퍼센트, 실습 90 퍼센트)

2) 종자의 생산 및 품질관리 과정

단계별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1단계 (품종 개발과 종자)	가) 품종개발	(1) 식물 육종의 역사 및 개요 (2) 유전자의 연관과 육종 (3) 변이와 선발 (4) 식물 육종의 목표 및 과정 (5) 다양한 육종의 원리와 과정	45시간 (이론 80 퍼센트, 실습 20 퍼센트)
	나) 종자의 생리 및 생산	(1) 종자의 종류 (2) 종자의 형성과 구조 (3) 종자의 구성 성분 (4) 종자의 휴면 (5) 종자의 발아 (6) 종자의 발아력과 발아세 (7) 종자의 수명과 퇴화 (8) 종자의 증식 및 채종 (9) 종자의 수확, 건조 및 저장	
2단계 (품종 보급)	가) 종자 유통	(1)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개요 (2) 「특허법」과 식물특허의 보호 (3) 종자의 유통과 마케팅(이론 교육)	35시간 (이론 60 퍼센트, 실습 40 퍼센트)
	나) 종자가공 및 품질검사	(1) 종자 가공 및 정선 기술의 이해 (2) 종자의 발아력 증진기술 (3) 종자의 코팅기술 (4) 종자의 병해충과 그 방제 (5) 종자 품질검사와 보증	
3단계	실습 및 현장학습	(1) 종자회사 종자처리 시설 및 종자 관련 기관 견학 (2) 종자 검사 실습 ○ 순도검정 및 활력검정 실습 ○ 종자감염병 진단 실습	20시간 (이론 10 퍼센트, 실습 90 퍼센트)

[별표 2]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근거 법조문	위반행위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제3항	가.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종자관리사 자격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이 중취업을 2회 이상 한 경우 다. 업무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처분기간에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등록취소
	마.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바. 종자관리사 자격과 관련하여 이종취업을 1회 한 경우	업무정지 1년
	사.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별표 3]

보증표시(제20조 관련)

1. 채종 단계별 구분이 필요한 종자

보증종자  
원원종

분류번호:  
종명(種名):  
품종명:  
로트(Lot)번호:  
발아율(%):  
이품종률(%):  
유효기간:  
무게(g) 또는 낱알 개수(립):  
포장일:           년           월

보증기관(종자관리사):

비고

- 바탕색은 흰색으로, 대각선은 보라색으로, 글씨는 검은색으로 표시한다.
- 유전자변형종자의 경우에는 포장일란 아래에 “유전자변형종자임”이라고 표시한다.

보증종자  
원종

분류번호:  
종명(種名):  
품종명:  
로트(Lot)번호:  
발아율(%):  
이품종률(%):  
유효기간:  
무게(g) 또는 낱알 개수(립):  
포장일:           년           월

보증기관(종자관리사):

비고

- 바탕색은 흰색으로, 글씨는 검은색으로 표시한다.
- 유전자변형종자의 경우에는 포장일란 아래에 “유전자변형종자임”이라고 표시한다.

보 증 종 자

보 급 중 (I)

분류번호:  
 증명(種名):  
 품 종 명:  
 로트(Lot)번호:  
 발 아 율(%):  
 이품종률(%):  
 유효기간:  
 무게(g) 또는 낱알 개수(립):  
 포장일:       년       월

보증기관(종자관리사):

비고

1. 바탕색은 흰색으로, 글씨는 검은색으로 표시한다.
2. 유전자변형종자의 경우에는 포장일란 아래에 “유전자변형종자임”이라고 표시한다.

보 증 종 자

보 급 중 (II)

분류번호:  
 증명(種名):  
 품 종 명:  
 로트(Lot)번호:  
 발 아 율(%):  
 이품종률(%):  
 유효기간:  
 무게(g) 또는 낱알 개수(립):  
 포장일:       년       월

보증기관(종자관리사):

비고

1. 바탕색은 붉은색으로, 글씨는 검은색으로 표시한다.
2. 유전자변형종자의 경우에는 포장일란 아래에 “유전자변형종자임”이라고 표시한다.

2. 채종 단계별 구분이 필요하지 않은 종자

보 증 종 자

분류번호:  
 증명(種名):  
 품 종 명:  
 로트(Lot)번호:  
 발 아 율(%):  
 이품종률(%):  
 유효기간:  
 무게(g) 또는 낱알 개수(립):  
 포장일:       년       월

보증기관(종자관리사):

비고

1. 바탕색은 파란색으로, 글씨는 검은색으로 표시한다.
2. 유전자변형종자의 경우에는 포장일란 아래에 “유전자변형종자임”이라고 표시한다.

3. 묘목

보증번호:  
 작물명:  
 품종명:  
 대목명(臺木名):  
 유효기간:  
 생산연도:

이 묘목은 보증기관(종자관리사)이 보증하는 규격묘목임

보증기관(종자관리사):

비고

1. 바탕색은 파란색으로, 글씨는 검은색으로 표시한다.
2. 표지 크기는 10cm(가로)×3cm(세로) 이상으로 한다.

4. 해외수출용 종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Certified Seed</div> Republic of Korea
Reference Number:
Species:
Variety Denomination:
Lot Number:
Germination Capacity(%):
Purity(%):
Validity:
Weight(g) or volume:
Date of Packing:
The Official Seed Certifying Agency:

비고: 바탕색은 파란색으로, 글씨는 검은색으로 표시한다.

[별표 4]

**종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및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잠착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1조에 따른 보호 품종의 실시 여부 등에 관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3호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라.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을 받지 않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마. 종자업자가 종자업 등록을 한 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등록취소
바. 종자업자가 법 제3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종자관리사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등록취소
사.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7호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아. 법 제40조에 따라 수출·수입이 제한된 종자를 수출·수입하거나, 수입되어 국내 유통이 제한된 종자를 국내에 유통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8호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자.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용성시험을 받지 않은 외국산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9호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차.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10호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60일
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종자 등의 조사나 종자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11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60일
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생산이나 판매를 중지하게 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12호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별표 5]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제35조제1항 관련)**

1. 품질검사의 기준

대 상	검 사 기 준
법 제31조에 따른 보증표시를 한 보증종자	발아율, 이품종률, 무게 또는 낱알 개수가 보증표시된 것과 같은지 여부
법 제43조에 따른 품질표시를 한 유통종자	발아율, 무게 또는 낱알 개수가 품질표시된 것과 같은지 여부

2. 품질검사의 방법

가. 발아율

- 1) 수거한 정립종자 중에서 무작위로 400립을 추출하여 100립 4반복 조사한다. 검사 방법은 종이배지를 활용하고, 종이배지에서 평가할 수 없는 묘(苗)가 나오면 모래 또는 적당한 흙으로 온도, 수분 및 광(光) 조건을 같게 하여 재시험을 한다.
- 2) 결과 판정은 정상으로 분류되는 종자의 숫자 비율로 나타내고 평균 발아율은 반올림한 정수로 기록한다.

나. 이품종률

- 1) 종자 검사는 무작위로 400립을 추출하여 100립 4반복 조사하며, 확대장비, 시약 처리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형태적·화학적 특성, 색깔을 검사한다. 결과는 이품종 종자의 중량 비율로 판정한다.
- 2) 어린 묘 검사는 무작위로 400묘를 추출하여 100묘 4반복 조사하며, 검사방법은 식별 가능한 형태적 특성을 관찰하는 것으로 한다. 결과는 이품종 종묘의 숫자 비율로 판정한다.
- 3) 온실·생육상 검사는 무작위로 100주(株) 이상을 추출하여 조사하며, 검사방법은 식별 가능한 형태적 특성을 관찰하는 것으로 한다. 결과는 이품종 종묘의 숫자 비율로 판정한다.
- 4) 포장(圃場)에서 하는 식물체 검사는 제출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2반복하여 시험구에 파종해서 하며, 검사방법은 식별 가능한 형태적 특성을 관찰하는 것으로 한다. 결과는 이품종 식물체의 숫자비율로 판정한다.

다. 무게 또는 낱알 개수

종자시료를 4번 반복하여 계량하여 평균 중량 및 평균 낱알 개수로 계산한다.

[별표 6]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제43조제1항 관련)

1. 수수료의 금액

가.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에 관한 수수료

- 1)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당 3만8천원
- 2) 등재심사

항목	수수료
서류심사	품종당 5만원
재배심사	품종당 연간 50만원. 다만,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과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같이 하는 경우는 품종당 10만원으로 한다.

나.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 품종당 2만원

다. 국가보증에 관한 수수료

- 1) 국가보증 신청: 품종당 1천5백원
- 2) 국가보증검사 결과에 대한 재검사 신청: 품종당 1천5백원
- 3) 국가보증검사

항목	수수료
포장(圃場)검사	10아르(a)당 2만원
종자검사	품종당 5만원
종자 재검사	품종당 5만원

라. 보증서 발급에 관한 수수료

- 1) 국문: 무료
- 2) 영문: 품종당 5천원

마.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의 신고에 관한 수수료: 품종당(씨앗으로 증식하는 1년생 화훼류의 경우 25품종 단위당) 3만원. 다만,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2만원으로 한다.

바. 수입적응성시험 신청 수수료

산림용종자: 품종당 5만원

사. 시험·분석 신청에 관한 수수료

- 1) 시험·분석 신청: 품종당 1천5백원
- 2) 시험·분석

항목	수수료
재배시험	품종당 50만원
유전자분석	품종당 30만원
종자품질분석	품종당 5만원

아.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수수료

- 1) 분쟁조정 신청: 품종당 1천5백원
- 2) 분쟁조정 관련 시험·분석

항목	수수료
재배시험	품종당 50만원
유전자분석	품종당 30만원
종자품질분석	품종당 5만원

자. 그 밖의 수수료

- 1) 각종 서류의 등본·초본 또는 증명의 신청: 1건당 5백원. 다만, 복사가 필요한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1면당 1백원씩을 더한다.
- 2) 각종 서류의 사본 신청: 1면당 2백원

2. 수수료의 납부기간

수수료는 다음 각 목의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가. 제1호가목2)의 등재심사 수수료: 수수료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나. 제1호다목3)의 종자검사 수수료: 포장검사 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다. 제1호사목2)의 시험·분석 수수료 및 같은 호 아목2)의 시험·분석 수수료: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라. 그 밖의 수수료: 신청 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열람일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전화번호

「종자산업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 현황 1부 2. 전문 교수요원 확보 현황 1부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1부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4. 대표자 주소:
5. 사무소 소재지:

「종자산업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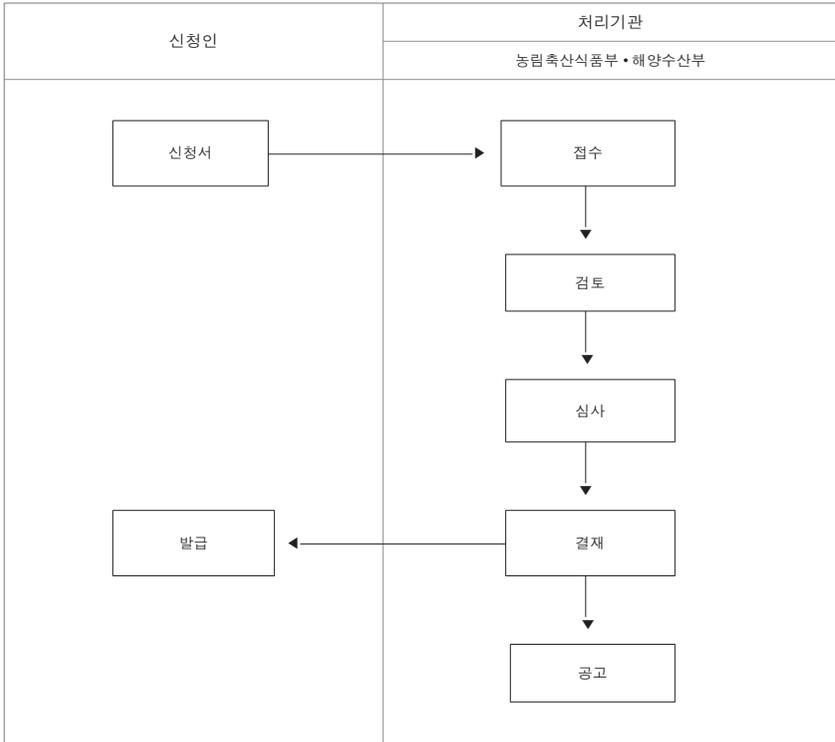
210mm×297mm[보존용지 12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법인 명칭	전화번호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육성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한글)	(영문)
품종의 명칭	(한글)	(영문)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	(별지 사용)	
품종의 성능 및 시험성적	(별지 사용)	
재배적응지역		
재배상 유의사항		

「종자산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귀하  
국립수산과학원장

첨부서류	1. 품종의 사진 및 종자시료. 다만, 종자시료가 영양체인 경우에는 재배시험 적기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품종목록 등재신청 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심사서 1부(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 신청 시 : 품종당 3만8천원 2. 등재심사 시 * 서류심사 : 품종당 연간 5만원 * 재배심사 : 품종당 연간 50만원(다만, 「식물신 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과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10만원) * 등재심사 수수료는 수수료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기한입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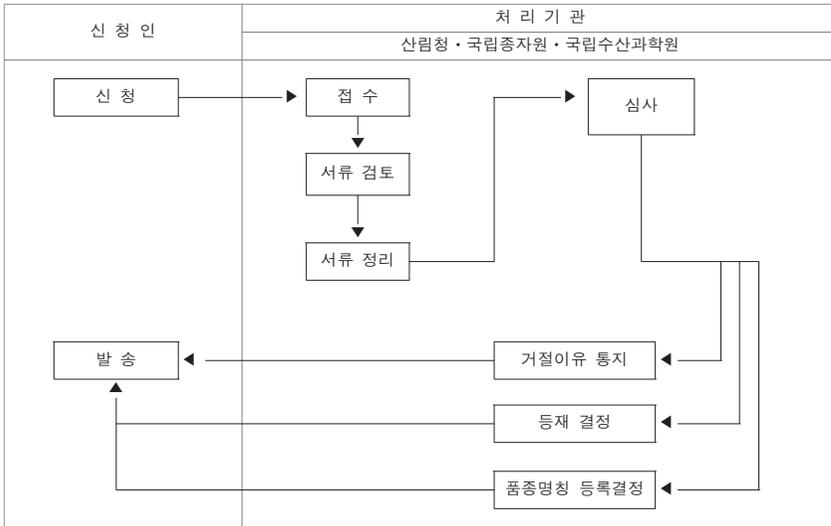
(뒤쪽)

작성방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육성자가 신청인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과 같음”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3. “주소”란에는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본사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적고, 주소 끝의 괄호 안에 우편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예] ○○도 ○○시(군) ○○동(면) ○○로 ○○(△△△-△△△)  
 \* 시·도 명칭은 두 글자 약칭을 사용하여도 됩니다.(서울특별시→서울, 충청북도→충북)
4.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란에는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을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 학명: *Allium cepa* L., 일반명: 양파
5. “품종의 명칭”란에는 품종의 명칭을 한글과 영문으로 적어야 합니다. 한글의 영문표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00-8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외국어의 한글 표기의 경우도 외국어를 한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합니다.  
 [예] 한글 품종명: 통일(Tongil), 외국품종명: Yellow king(옐로우 킹)
6.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란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을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품종임을 적어야 합니다.
7. 신청서에는 원칙적으로 삭제·추가 등 정정을 하여서는 안 되나, 부득이하게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여백에 고친 글자 수를 쓰고 신청인(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국가품종목록 등재 [ ] 거절 [ ] 취소 이유에 대한 의견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제 출 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등재신청번호	등재 신청일	
담당 심사관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거절·취소 이유를 통지받은 날짜	의견서 제출 마감일		
의견내용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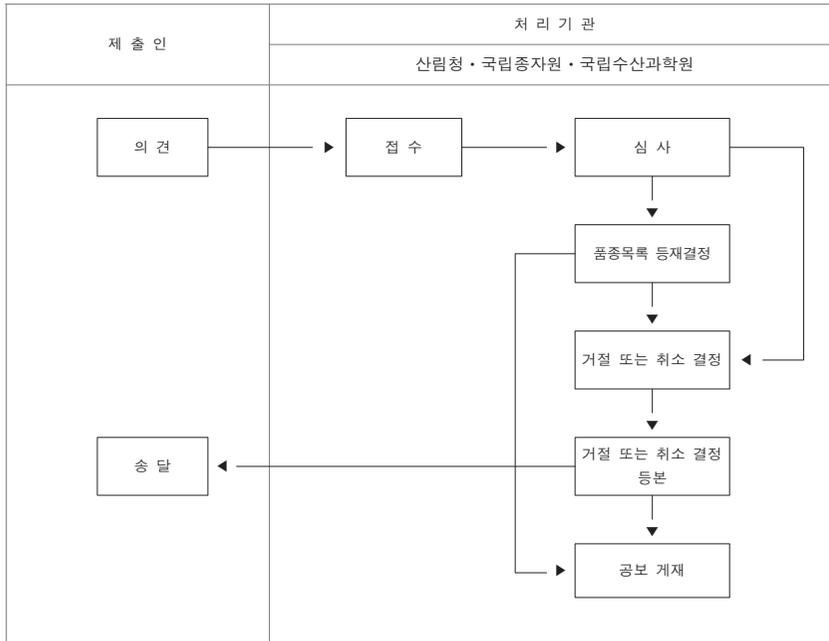
(뒤쪽)

### 작성방법

1. "제출인"란 및 "품종의 명칭"란은 신청서에 적힌 것과 같게 적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 후에 신청인 및 품종의 명칭을 변경 또는 정정한 경우에는 그 변경 또는 정정된 주소·성명 및 품종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2. "의견내용"란에는 의견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난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청인"을 "제출인"으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 처리절차

이 의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국가품종목록

국가품종목록 등재번호	제 호	
등재신청에 관한 사항	등재신청인	성명(대표자)
		주 소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법인 명칭
	등재신청 연월일	
품종에 관한 사항	육성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품종의 명칭	
품종의 성능		
재배적응지역		
담당 심사관		
등재 유효기간		
년 월 일 등재		
그 밖의 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국가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b>7일</b>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법인 명칭	전화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등재번호	등재일
	등재 유효기간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연장신청 기간		
연장이유		
「종자산업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b>산 립 청 장</b> <b>국 립 종 자 원 장</b> 귀하 <b>국립수산과학원장</b>		
첨부서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만원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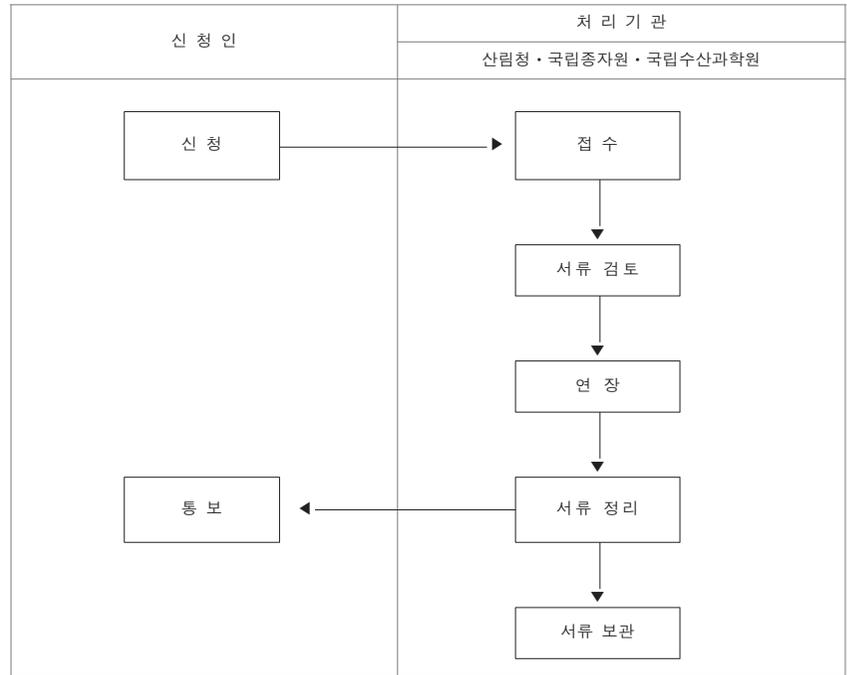
(뒤쪽)

작성방법

1. 연장신청은 국가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연장신청 기간"란에는 신청기간을 연월일로 적어야 합니다.
2. "사건과의 관계"란에는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인, 품종의 육성자, 종자생산자 등 사건과의 관계를 적어야 합니다.
3. "연장이유"란에는 연장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정부 보급종자 피해보상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확인자 (이장·통장·어촌계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피해 발생 현황	작물명	품종명	종자 구입량	단계별 피해 발생				피해 발생 내용
				파종 이전	육묘	못자리 (벼만 해당)	직접 파종	
			kg	kg	kg	kg	kg	
피해 보상 항목	[ ] 종자대, [ ] 육묘에 사용된 상토 등 자재비, [ ] 인건비 [ ] 기타 ( )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부 보급종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000 이장(통장·어촌계장)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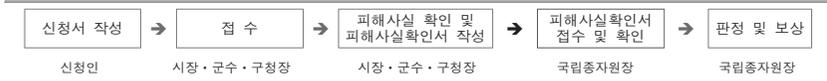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종자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종자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자료 등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및 피해 보상 기준 안내**

1. 파종 이전 피해발생은 무게 또는 종자 수(數) 미달, 이물혼입, 부패, 변질 등의 피해를 말합니다.
2. 해당하는 보상 항목란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3. 피해 발생 농가는 피해 발생 현황 등에 대하여 해당 지역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으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피해 보상 항목별 금액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산물 생산비 또는 소득조사 관련 통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립종자원장이 결정합니다.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국립종자원장  
(경유)

**제 목 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가별 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 피해 발생 농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2. 피해 발생 확인							
작물명	품종명	종자 구입량	단계별 피해발생				피해 사실 확인 결과
			파종 이전	육묘	못자리 (벼만 해당)	직접 파종	
		kg	kg	kg	kg	kg	
계							

- 붙임 1. 종자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종자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자료 등.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사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등록 신청서  
**종자관리사** [ ] 등록증 변경발급 신청서  
 [ ]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관리품목	[ ] 일반 [ ] 버섯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재발급 신청사유	재발급 신청사유		
	사유가 발생한 날		

「종자산업법」 제2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귀하  
**국립수산과학원장**

첨부서류	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자격증 사본 1부 나. 종자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1부 다.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장 2. 변경발급 신청의 경우: 종자관리사 등록증 및 사진 1장 3. 재발급 신청의 경우: 사진 1장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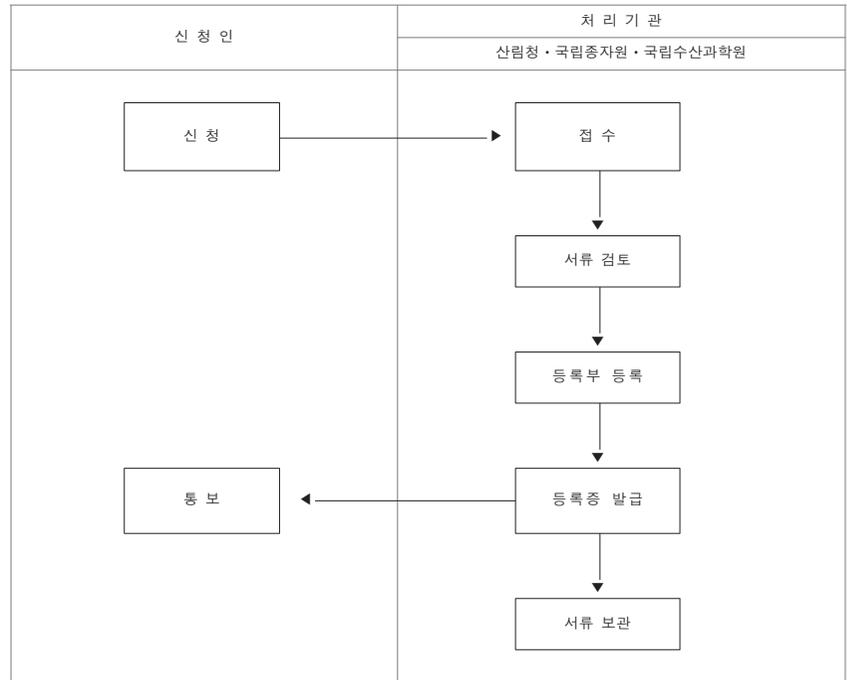
(뒤쪽)

작성방법

1. 서식 제목에서 ([ ] 등록 신청서, [ ] 등록증 변경발급 신청서, [ ]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중 해당란에 표시 (√)를 하여 제출서식의 종류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2. “관리품목”란에는 [ ] 일반, [ ] 버섯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3. “변경사항”란에는 종자관리사 등록증 변경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증 기재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3. “재발급 신청사유”란에는 종자관리사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증을 잃어버림 또는 헐어 못 쓰게 됨 등과 같은 재발급 신청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4.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국가보증 관련 [ ] 포장검사 신청서  
 [ ] 자체보증 [ ] 종자검사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검사신청 작물정보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포장 (圃場) 검사	검사신청 면적(a) 포장 소재지	검사 희망일
종자검사	검사 희망일		검사 희망장소
	검 사 신청량	포장단량(包裝單量)(kg)	
		포장(包裝) 개수	
		중량(kg)	

「종자산업법」 제28조제1항·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 립 수 산 과 학 원 장  
 종 자 관 리 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1. 자체보증 관련인 경우: 없음 2. 국가보증 관련인 경우 ◦ 보증신청: 품종당 1천5백원 ◦ 포장검사: 10a당 2만원 ◦ 종자검사: 품종당 5만원(포장검사 합격통지들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납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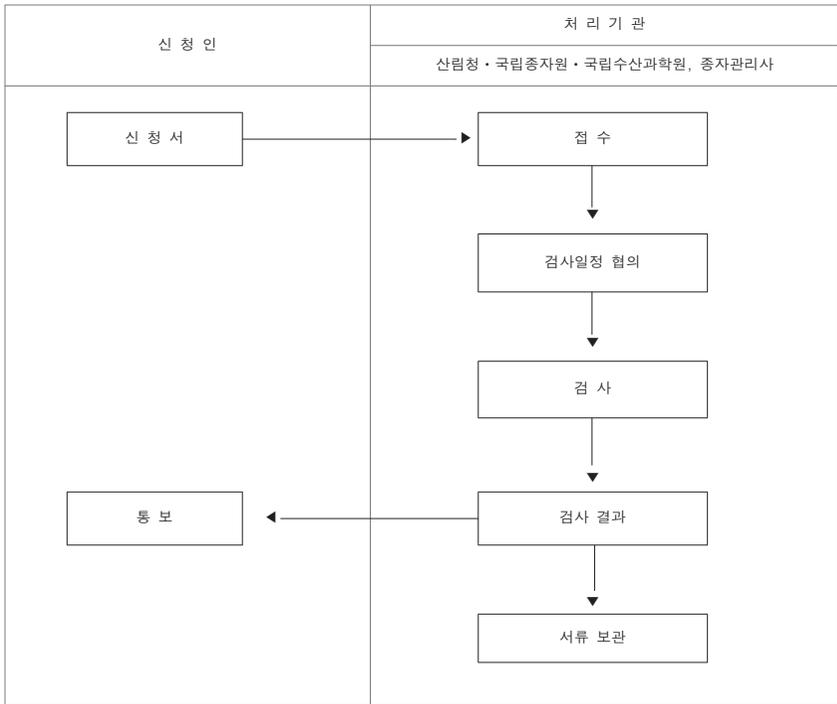
(뒤쪽)

작성방법

1. 서식 제목에서 [ ] 국가보증, [ ] 자체보증 중 하나를 선택하고, [ ] 포장검사, [ ] 종자검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제출서식의 종류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2.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재검사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품종의 명칭			
1차 검사일	검사 희망일	검사 희망장소	
검사 신청량	포장단량(包裝單量)(kg)		
	포장(包裝) 개수		
	중량(kg)		

「종자산업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 립 수 산 과 학 원 장  
종 자 관 리 사  
귀하

첨부서류	종자검사 결과 통지서 1부	수수료 ◦ 재검사 신청: 품종당 1천5백원 ◦ 종자 재검사: 품종당 5만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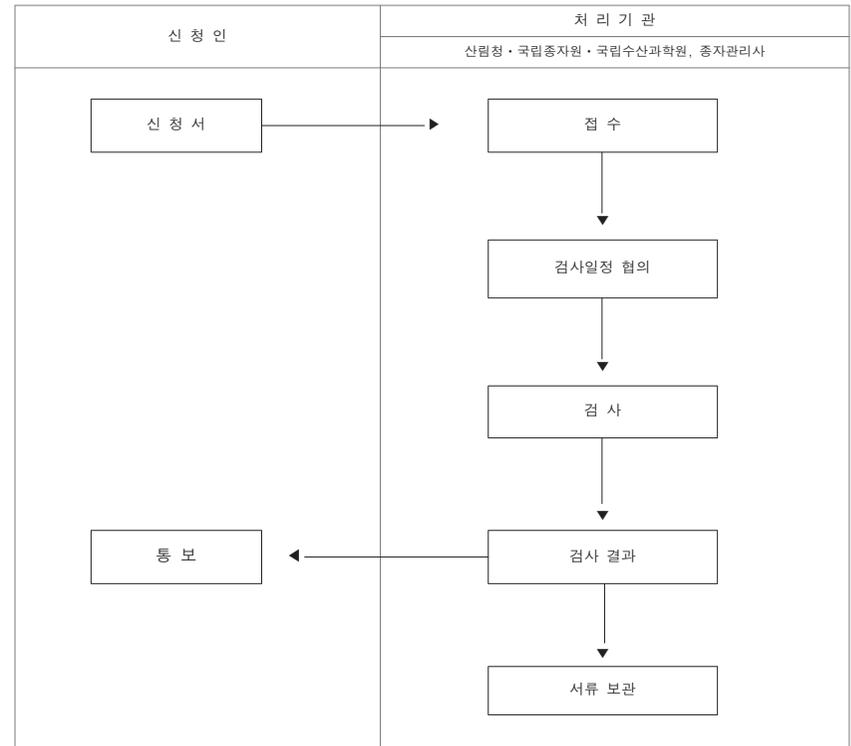
(뒤쪽)

작성방법

작성방법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보증서 발급신청서** [ ] 국문  
[ ] 영문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작물의 명칭

---

품종의 명칭

---

채종 단계

---

종자로트 번호

---

「종자산업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종 자 관 리 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국문: 없음 ◦ 영문: 품종당 5천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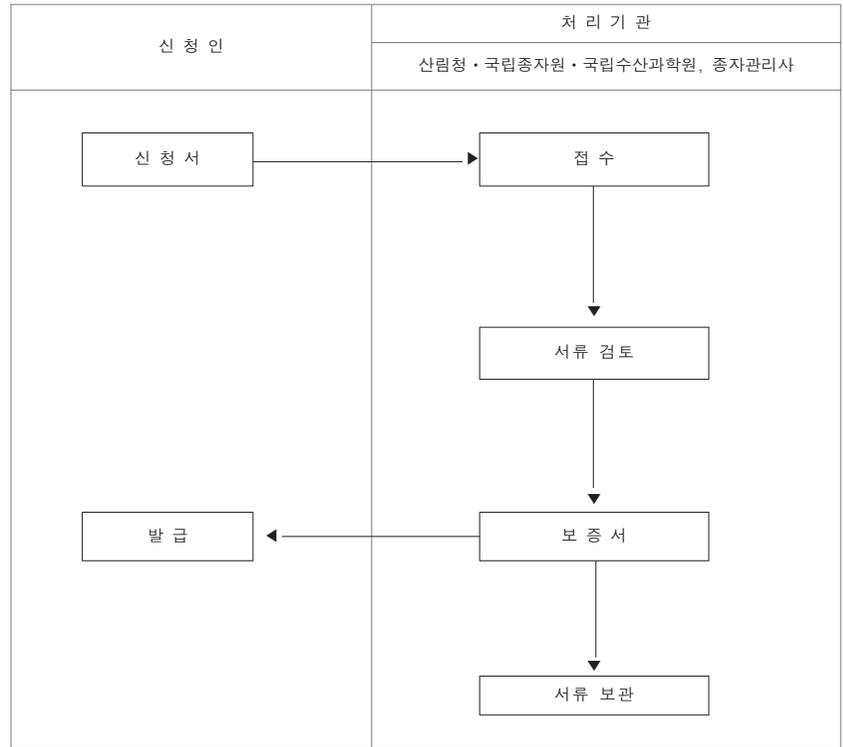
(뒤쪽)

**작성방법**

- 보증서 발급신청 시 [ ]국문, [ ]영문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영문 보증서를 신청하는 경우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채종 단계, 종자로트 번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모두 적어야 합니다.
-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보증서

번호 :  
 작물의 명칭 :  
 품종의 명칭 :  
 채종 단계 :  
 종자로트 번호 :  
 보증 유효기간 :

「종자산업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 종자로트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종자관리사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종자업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법인 명칭			
내용	상 호			
	종자업 구분 <input type="checkbox"/>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 <input type="checkbox"/> 종자를 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			
	종자업 종 류	<input type="checkbox"/> 채소 <input type="checkbox"/> 과수 <input type="checkbox"/> 화훼 <input type="checkbox"/> 버섯		
		<input type="checkbox"/> 콩 <input type="checkbox"/> 식량작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취급 작물			
	종자관리사 보유 여부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버섯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주사무소의 소재지			
주시설의 소재지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1.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카 호의 작물만을 생산·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종자업 등록사항 변경통지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통지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법인명칭	전화번호	
	주소		
	종자업 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종자업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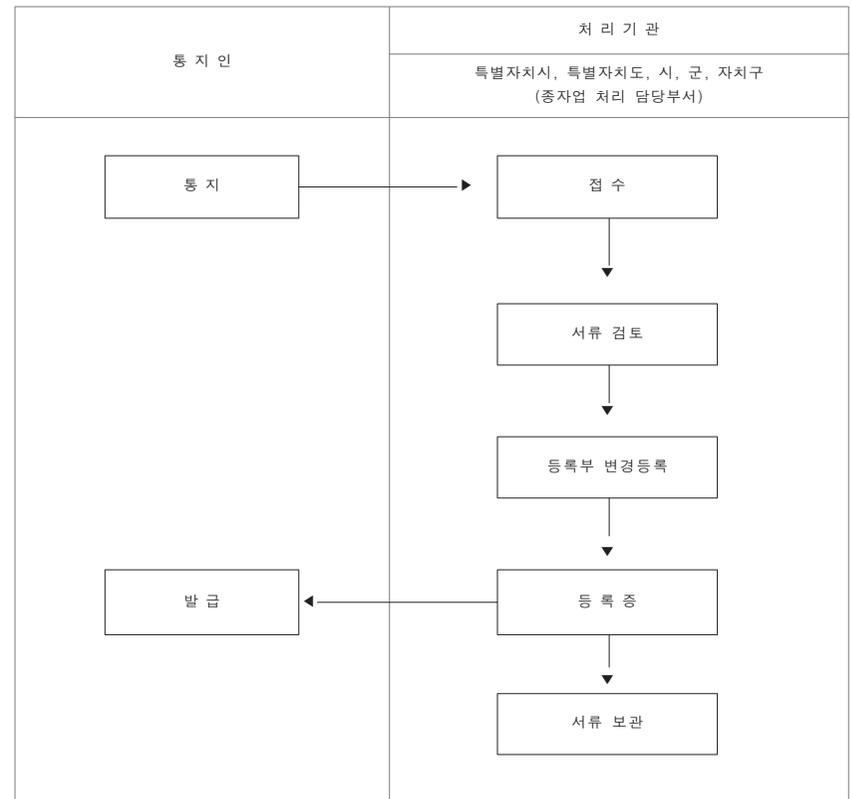
(뒤쪽)

#### 작성방법

작성방법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처리절차

이 통지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종자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법인 명칭	전화번호
	주 소	
사건의 표시	종자업 등록번호	종자업 등록일
신청사유	재발급 신청사유	
	사유가 발생한 날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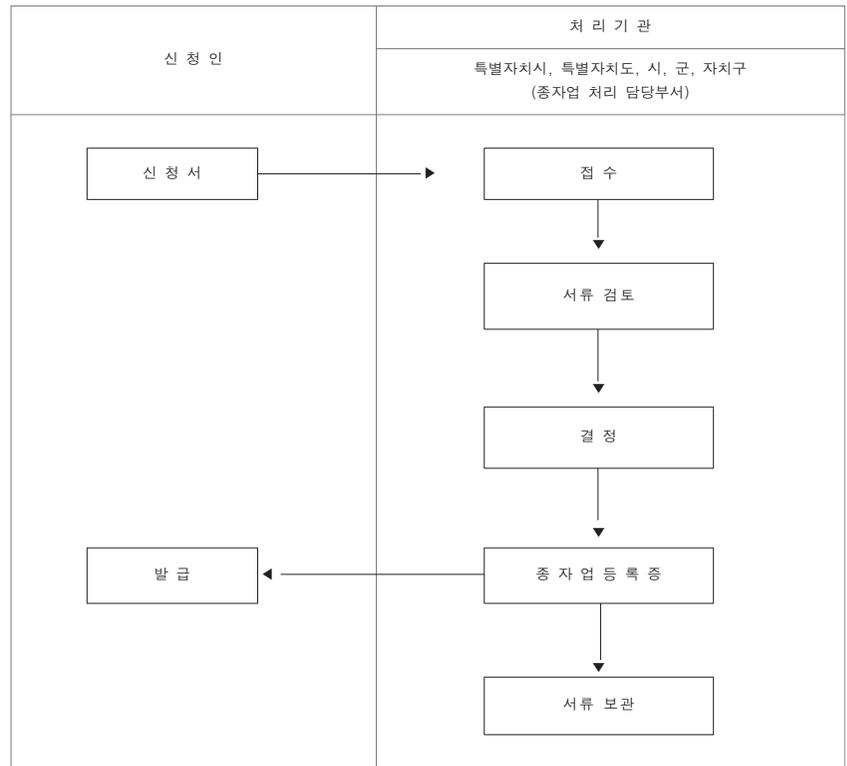
(뒤쪽)

작성방법

1. “재발급 신청사유”란에는 종자업등록증을 잃어버림 또는 종자업등록증이 활어 못 쓰게 됨 등과 같은 재발급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2.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	
	주소		
	법인명칭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	
육성자	주소	전화번호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품종의 명칭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	(별지 사용)
품종의 특성 설명	(별지 사용)
종자업 등록번호	

「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종 생산·수입 판매를 신고합니다.

신 고 인(대리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귀하  
**국립수산과학원장**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품종의 사진이나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및 종자서류(다만, 종자서류가 모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 1부(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심사서 1부(유전자변형생물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식품방역법」 제17조에 따른 검역합격증명서 1부(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금지품만 해당합니다)</li> <li>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최초의 생산 판매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li> </ol>	<p>수수료 전자: 품종당 2만원 서면: 품종당 3만원</p> <p>* 씨앗으로 증식하는 1년생 화훼류의 경우 25품종 단위당 1건으로 처리합니다.</p>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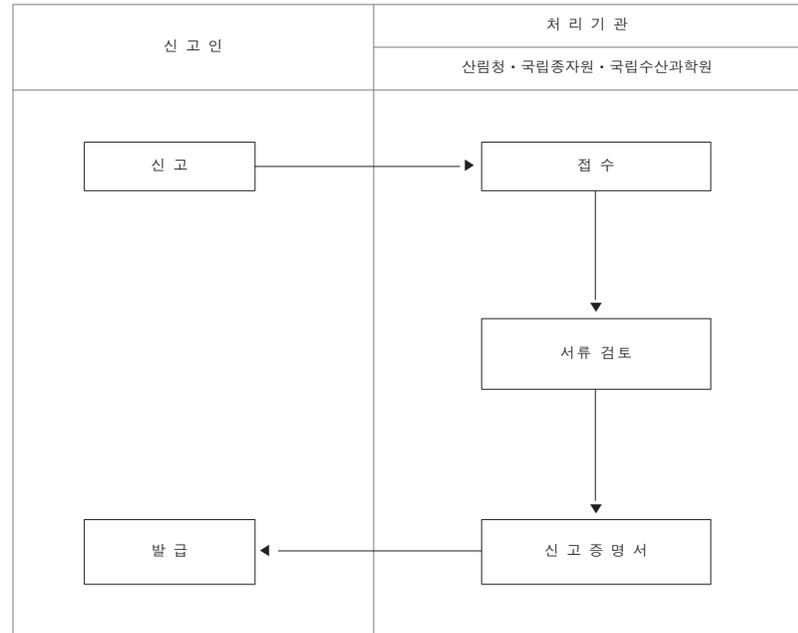
(뒤쪽)

**작성방법**

-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란에는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을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 학명: *Allium cepa* L., 일반명: 양파
-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란을 적을 때 수입품종의 경우에는 품종육성 과정을 설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종자업 등록번호”란에는 수입 판매 신고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을 따르되,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신고번호: \_\_\_\_\_

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법인 명칭	전화번호
육성자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_\_\_\_\_

품종의 명칭 \_\_\_\_\_

「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직인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품종 생산·수입 판매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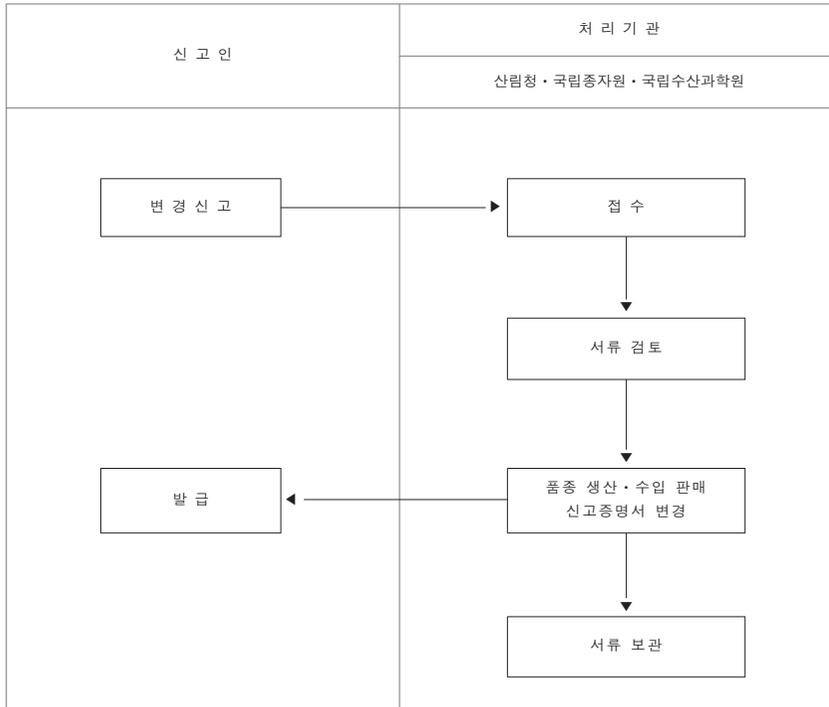
(뒤쪽)

작성방법

작성방법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을 따르되,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번호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일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

재발급 사유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귀하  
국립수산물학원장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500원
------	----	-------------

작성방법

1. “재발급 사유”란에는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림 또는 헛어 못 쓰게 될 등과 같은 재발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2.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적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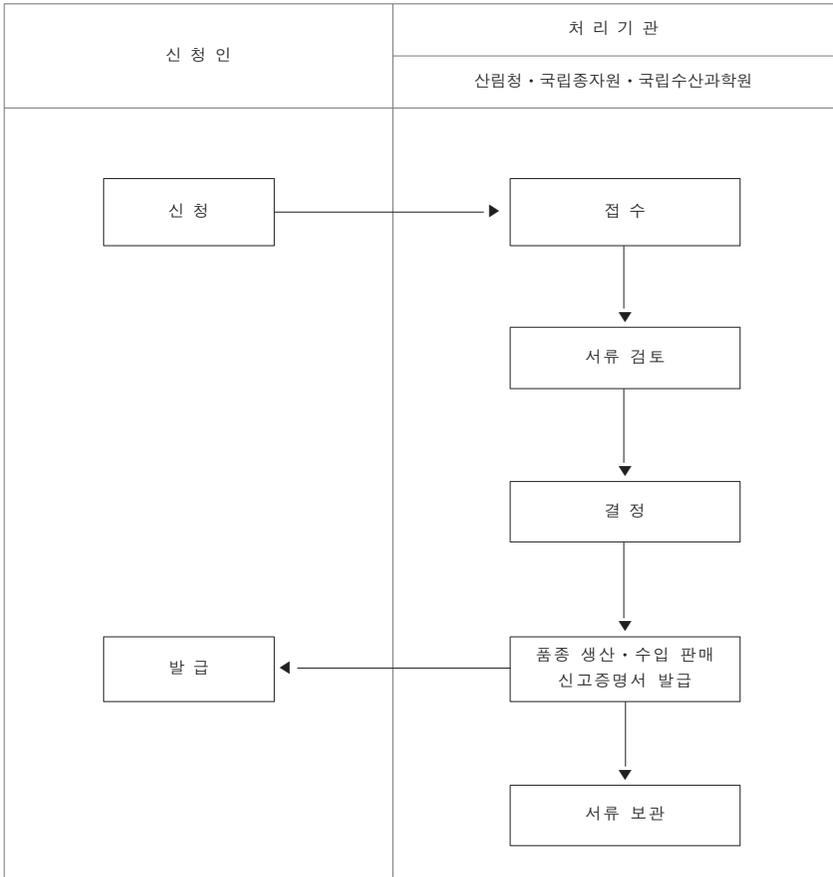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앞쪽)

제 호

**유통종자 단속 공무원증**

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mm × 90mm [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유통종자 단속 공무원증**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종자산업법」 제4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유통종자 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직인

- 이 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어 또는 양도하면 안 됩니다.
- 이 증을 준은 사람은 이 증을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년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소	
	법인명칭	전화번호
내용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품종의 명칭	
	육성자의 성명	
	품종의 주요 특성	
	재배요령 및 주의사항	

「종자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농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

첨부서류	수입적응성시험 계획서 1부	수수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 품종당 5만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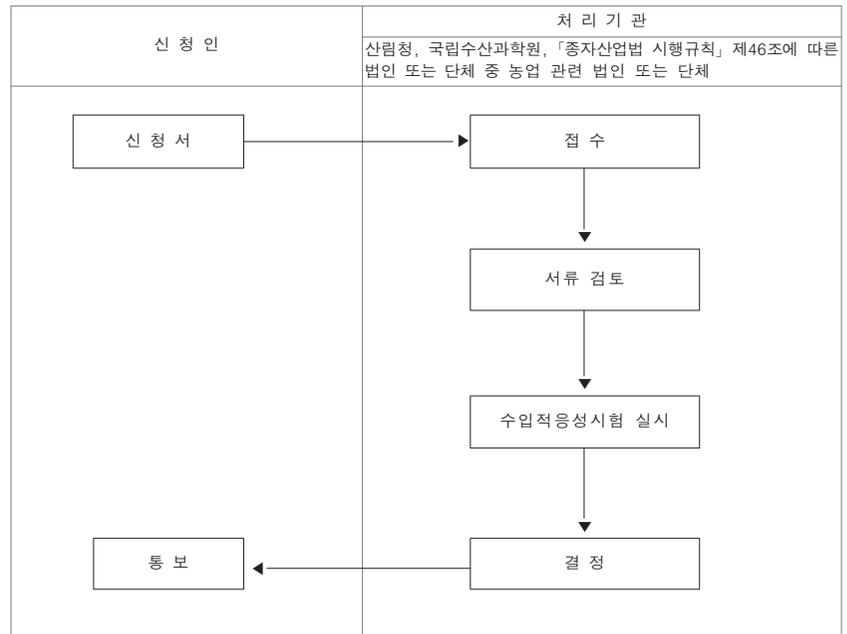
(뒤쪽)

#### 작성방법

-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란에는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을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 학명: *Allium cepa L.*, 일반명: 양파
- “품종의 주요 특성” 란에는 품종의 주요 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고, 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품종임을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재배요령 및 주의사항” 란에는 재배요령 및 주의사항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법인 명칭	전화번호	
내용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품종의 명칭		
	추천 물량		
	수입처(원산지)		
	수입 예정일		

「종자산업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행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국제종자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자보증서 1부(품종 목록 등재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 1부(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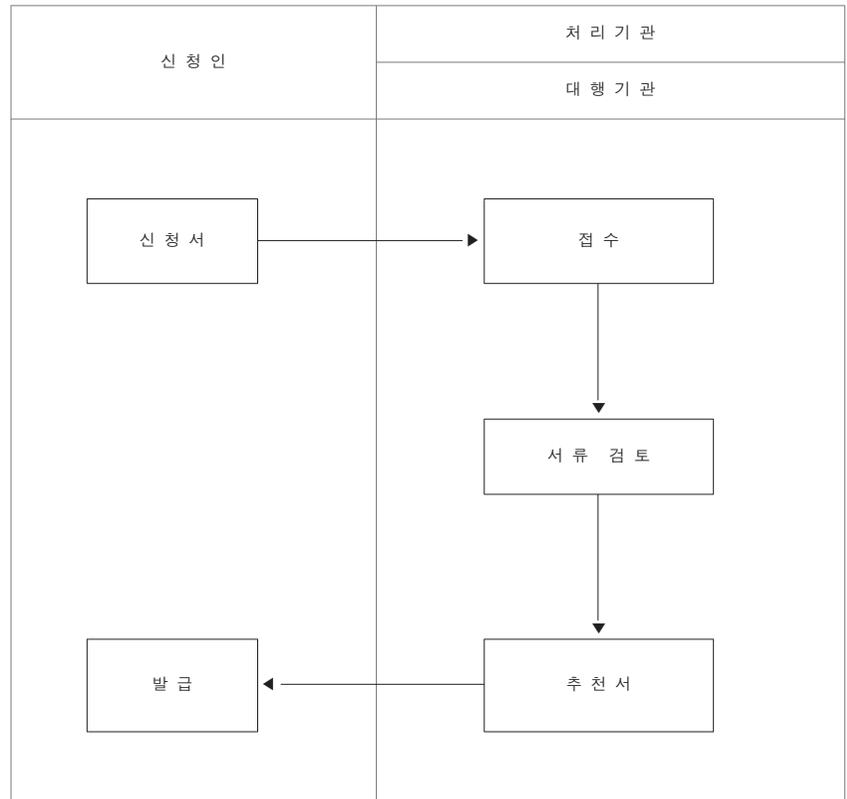
-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란에는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을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 학명: *Allium cepa* L., 일반명: 양파
-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b>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서</b>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법인 명칭	전화번호
내용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품종의 명칭	
	추천 물량	
	수입처(원산지)	
	수입 예정일	
<p>「종자산업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span style="font-size: 1.2em;">대행기관의 장</span>     <span style="border: 1px solid orange; padding: 2px 5px;">직인</span> </p>		

210mm×297mm[백상지 120g/㎡]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b>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 ] 시험·분석     신청서</b> [ ] 시료채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span style="float: right;">(앞쪽)</span>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년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법인 명칭	전화번호
생산·판매한 종자업자	상 호	종자업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종자에 관한 사항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품종의 명칭
	종자 구입량	종자 구입 시기
재배 및 관리 내용	[파종일 또는 정식일(定植日), 온도·습도 관리, 시비, 관수, 약제 살포 등]	
분쟁의 내용		
<p>「종자산업법」 제47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b>산 립 청 장</b>  <b>국 립 종 자 원 장</b>     귀하  <b>국립수산과학원장</b> </p>		
구비물품	종자시료(시험·분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시험·분석 • 신청: 품종당 1천5백원 • 재배시험: 품종당 50만원 • 유전자분석: 품종당 30만원 • 종자품질분석: 품종당 5만원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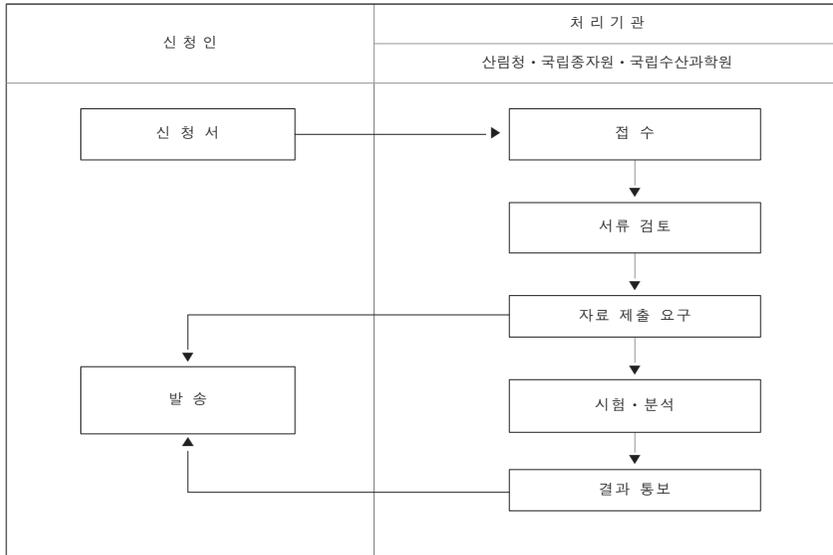
(뒤쪽)

**작성방법**

1. 서식 제목에서 신청 종류를 나타내는 [ ] 시험·분석, [ ] 시료채취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제출서식의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2. "생산·판매한 종자업자"란 중 "상호"란에는 회사명 또는 법인명을 적어야 합니다.
3.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란에는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을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학명: *Allium cepa* L., 일반명: 양파
4. "종자 구입량"란 및 "종자 구입 시기"란에는 종자업자에게서 구입한 물량과 시기를 적어야 합니다.
5. "재배 및 관리 내용"란에는 시험·분석을 받으려는 품종에 대한 재배 및 관리 내용인 파종일 또는 정식일, 온도·습도 관리, 시비, 관수, 약제 살포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적어야 하고,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6. "분쟁의 내용"란에는 분쟁이 발생한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야 하고,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7.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보 상 청 구 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청구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법인 명칭	전화번호	
내용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종자업자 성명	주소	
	피해 내용		

「종자산업법」 제4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종자업자 귀하

첨부서류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금 산출 내역서 1부
2. 「종자산업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시험·분석 결과통보서 부분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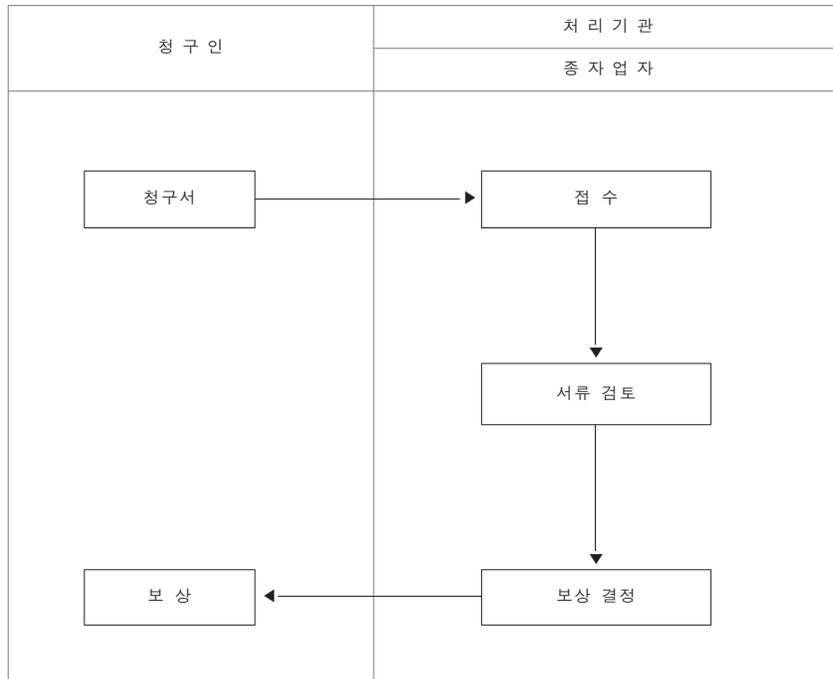
(뒤쪽)

작성방법

1. "피해 내용"란에는 보상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야 하고,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분쟁조정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년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상 호	등록번호
	주 소	

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 경과의 개요

「종자산업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귀하  
국립수산물과학원장

첨부서류	수수료
1. 분쟁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할 때까지의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2. 분쟁조정 신청건의 심사·조정예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1. 분쟁조정 신청: 품종당 1천5백원 2. 시험·분석 ◦ 재배시험: 품종당 50만원 ◦ 유전자분석: 품종당 30만원 ◦ 종자품질분석: 품종당 5만원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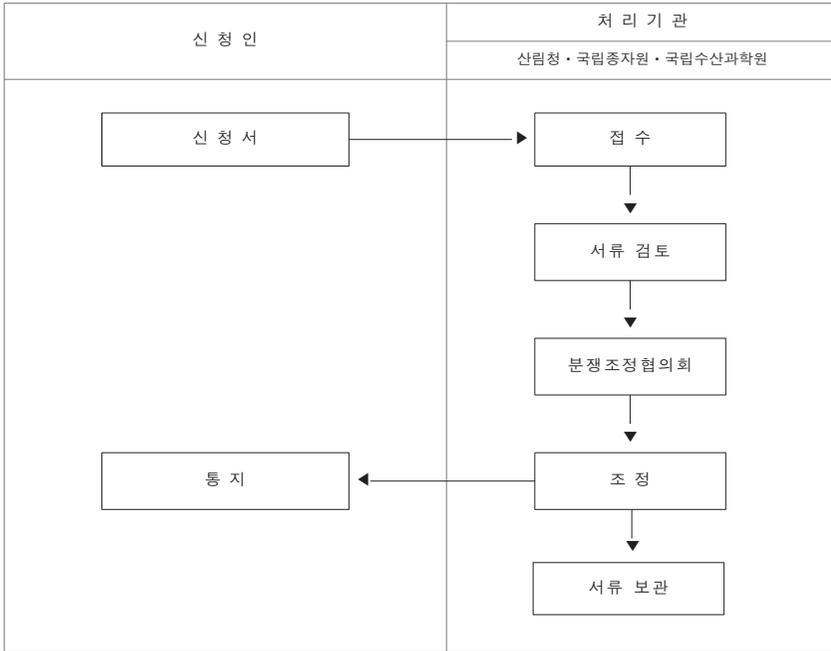
(뒤쪽)

작성방법

1. "조정을 받으려는 사항"란에는 신청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 경과의 개요"란에는 분쟁 경과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 따르되, "신청인"을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으로 보고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남 부 서

부과 명세	□ 납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납부번호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납부자	실명번호																							
	주소																								
산출 근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rowspan="2">세 목</th> <th colspan="2">납기 내</th> <th rowspan="2">납기 후</th> </tr> <tr> <th>년</th> <th>월 일</th> </tr> <tr> <td>수수료</td> <td></td> <td>원</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합계 금액</td> <td></td> <td>원</td> <td></td> </tr> </table>			세 목	납기 내		납기 후	년	월 일	수수료		원										합계 금액		원	
세 목	납기 내		납기 후																						
	년	월 일																							
수수료		원																							
합계 금액		원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담당자:

년 월 일 산림청장 · 국립종자원장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인)

년 월 일 수납인

안 내 말 씀	□ 납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		
◆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납부할 때에는 은행 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번호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회계연도:	회계:	소관:
	납 부 자:		실명번호:
	금융기관	징수관 계좌	세목
			납기 내
		수수료	년 월 일
			원
		합계 금액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담당자:

년 월 일 산림청장 · 국립종자원장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인)

년 월 일 수납인

### 수수료 면제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면제대상 수수료

면제사유

「종자산업법」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 면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귀하  
**국립수산과학원장**

신청인 제출서류	1.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